

〈南北政治分科委員會〉

第5次會議會議錄

1992. 6.

統 一 院
(南北對話事務局)

〈目 次〉

1. 一般事項 3

2. 會議錄 5

1. 一般事項

가. 日 時：1992. 6. 9(火) 10：00~12：07(公開)

나. 場 所：板門店 우리側地域「平和의 집」

다. 雙方 代表團

區 分	우 리 側	北 側
委員長	李東馥(남북고위급회담 대표)	백남준(남북고위급회담 대표)
委 員	閔炳錫(청와대 외교안보비서관) 金達述(통일원 자문위원) 崔圭鶴(총리실 심의관) 姜根鐸(외무부 심의관) 辛光玉(법무부 심의관) 申 丁(합참 민심실장)	김완수(외교부 순회대사) 조상호(「조국전선」중앙위 서기국 부국장) 최성익(조평통 서기국 부장) 정영춘(조평통 서기국 참사) 심태진(정무원 상급 심의원) 조성대(조선중앙방송위 처장)
隨行員	윤정원, 이봉조, 문덕형 김명득, 한수웅	전재달, 류용석, 윤기욱 안명철, 김룡현, 최창수

會 議 錄

2. 會 議 錄

남(이동복) : 안녕하세요.

자, 멀지만 우리 악수 한번 합시다. 꼭 20일만인가요?

북(김완수) : 스무날 됐죠.

남(이동복) : 스무날 됐지.

안녕들 하셨어요?

북(김완수) : 상당히 먼것 같습니다.

남(이동복) : 글썸.

북(백남준) : 20일만인가?

남(이동복) : 꼭 20일만인가 그래. 별고 없으셨어요?

북(백남준) : 예, 뭐.

남(이동복) : 얼굴이 조금 타신거 같네.

북(백남준) : 그 저 단오절에도 좀 나가 돌아댁기고.

남(이동복) : 단오절에는 뭐 하세요? 거긴 단오절이 공휴일이데?

북(백남준) : 예, 공휴일. 그쪽에 이선생은 단오절 어떻게 쇠셨어?

남(이동복) : 우리는 단오절은 노는날이 아니예요. 그냥 24절기중에 하나
지. 단오하고 대개 식목일, 한식 이 근방 아닙니까, 그런가?

북(백남준) : 아니지. (웃음) 망종, 망종.

남(이동복) : 아니지, 그렇지. 단오가, 망종하고 그렇지.

북(백남준) : 예. 계절로는 망종이고.

남(이동복) : 우리는 그거는 노는날은 아니예요. 단오절 전후해서 어떻게 되나 우리가 어린이날이 대개 단오절 전후해서 있고, 그 다음에 불탄일이라고 해서 부처님 오신날, 그날이 노는날이니까 단오절은.

북(백남준) : 5월, 6월달 들어서 6월 1일이 국제아동절이고, 그다음에 6월 5일날 단오고, 6월 6일이 소년단절이고.

그러니까 단오는 뭐 지금 보면 민속명절인데 기록은 여러가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지만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파종을 끝내고 그리고 풍작과 풍어를 기원해서 굿도 하고, 제도 지내고 그런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오절 그런 날은 천체가 우주 중심에 놓인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그런 양기가 가장 왕강한 날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옛날에는 천중절이라고.

남(이동복) : 아, 천중절이라고 그랬어요?

북(백남준) : 천중절이라고, 예. 그래서 민간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수리취가지고 등글게 빗은 이런 절편을 만들어 먹는다는 거여,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남(이동복) : 창포? 그렇지, 우리도 그건 지금도.

북(백남준) : 그네도 뛰고, 남자들은 또 씨름도 하고, 그 왜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이 하고 성춘향이 오작교에서 만난 것도 단오날에 만났고.

남(이동복) : 그렇지, 맞아요.

북(백남준) : 그래 우리는 공휴인데, 그날에 보면 지방마다 아마 쇠는게 다

양해요. 여러가지만 즐겁게 쇠는데, 평양에서는 남녀노소 그저 떨쳐 나서서 음식을 갖춰가지고 모란봉, 그 대성산, 이쪽의 보통강, 그다음에 이쪽에 저 대동강 유역에 있는 공원, 유원지들 가서.

남(이동복) : 그 모란봉, 을밀대가 지금 일반에게 공개가 되고 있어요?

북(백남준) : 아, 그럼.

남(이동복) : 우리 72년에 모란봉 내각초대소에 있을 때는 을밀대는 공개가 안되던데.

북(백남준) : 아니, 그거는 공개 안됐던 일이 없어요.

남(이동복) : 아니, 그렇지 않던데. 그때 을밀대는 그 모란봉 내각초대소 입구에 성문 비슷한 게 있고, 거기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을밀대가 내각초대소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던데.

북(백남준) : 고거는 군대가 보초선 거는 그 부벽루에 있는 초대소 있지요? 아마 이위원장이랑 한번 가 보셨겠는데 그건 초대소에 손님을 경비하느라고 서 있는거고 모란봉이야 그건 유원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을밀대랑 이미부터 다 그건 공개돼 있고.

남(이동복) : 어디 비 좀 왔어요?

북(백남준) : 아, 어저께 비왔습니다.

남(이동복) : 비왔어요.

북(백남준) : 어저께 비오고, 오늘은 좀 때때로 소나기 온데도 있겠다 그런데.

남(이동복) : 금년에 우리 기상대 예보로는 비가 굉장히 많을거라고 그러디

다. 7월부터 8월까지 상당히 긴 장마가 있을거라고 그래요. 우리도 비에 미리 대비하라고 여러가지로 지금 하는데, 금년에 아마 이 한반도 일대가 조금 비가 많은 그런 해가 될 것 같다고 그래요. 서둘러 상당히 준비가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북(백남준) : 그쪽에 지금 모내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이동복) : 모내기는 중부이북은 거의 다 끝났지요. 중부이남은 지금도 한창하고 있고,

북(백남준) : 우리쪽에서는.

남(이동복) : 거의 다 끝나셨을테지.

북(백남준) : 지금 모내기는 이미 끝나고 모 김매기합니다. 물론 저기.

남(이동복) : 벌써?

북(백남준) : 예. 북쪽에 좀 냉한 곳에는 모내기가 다 끝난 상태고, 이쪽에 남쪽으로 나오면서는 모내기 이미 끝나고 지금 김매기가 한창입니다.

남(이동복) : 어떻습니까, 지금? 북에는 천수답하고 수리답하고 그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북(백남준) : 천수답이라는거는 거의 없습니다.

남(이동복) : 거의 없어요?

북(백남준) : 예. 작년, 재작년에 또 천리길 물길공사를 해서.

남(이동복) : 그 황해도쪽으로.

북(백남준) : 예, 예. 지금도 계속하지요. 계속하는데 그건 이미 보완하는거고. 그래서 저 산간지대 좀 이렇게 경사가 높은, 그래서 저 북쪽에는 논

판면적은 얼마없고, 그러니까 그게 일부 부분적으로, 그 극소량인데 그게 천수답이고 그 다음에는 수리답입니다. 전면적으로.

남(이동복) : 우리는 정총리께서 그저께 「리오데자네이로」 세계국제연합환경회의 때문에 떠나셨는데, 한동안은 연총리께서도 가신다고 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정총리께서 거기가서 연총리 반갑게 만날거라고 상당히 준비도 할라고 그러시고 그랬는데 뒤에 들으니까 안가시는거 같애요?

북(백남준) : 아마 가지지 않을거 같습니다.

남(이동복) : 글썄, 이쪽에서는 의신으로 연총리가 가신다고 한동안 나왔었어요.

북(백남준) : 우리는 강희원부총리 갔어요.

남(이동복) : 글썄, 그러시더라고.

북(백남준) : 요즘 어떻습니까, 그쪽에서는 을사조약때문에 굉장히 학계에 서랑 민간에서랑 많이 얘기되지요?

남(이동복) : 많이 되지요. 을사조약도 그렇고 여러가지 지역안에 여러가지 문제로 우리가 여러가지 연구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네요.

북(백남준) : 을사조약 같은거 보면 일제가 날조하고 위조해서 만들어낸, 그래서 우리 겨레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사회주의가 아주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해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격분스러운 것 뭐인가, 그러니까 1905년부터 일본의 조선침략사를 보면 41년이거든요. 반세기나마 조선사람들한테 몹쓸짓을 다했는데, 그런데 지금 똑똑한 사죄도, 반성도 보이지 않고 이 야망은

계속 꿈꾸고, 그러니까 상당히 경각성을 높여야 되고 우리 이 문제를 우리가 민족적인, 민족자주적인 입장에서 그걸 이번에 똑똑이 처리해야 될 거 같아요.

남(이동복) : 그 을사조약 그러니까 옥새를 날인이 안된 상태에서 그거가지고 말하자면 위조를 해서, 하고 한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남북간에 좀 연구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학술회의 같은거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텐데.

북(백남준) : 예, 우리는 뭐 큰 집단가지고 연구를 해요, 지금. 연구를 하고 자료도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

남(이동복) : 금년 8.15같은 때를 계기로 해서 남북에.

북(백남준) : 그런데 요즘은 뭐 연구하는 단계를 초월해서 공동대처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똑똑이 이번엔 계산을 하고 똑똑이 처리해야 되겠다고.

남(이동복) : 그 이전에 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교환할 것이 있으면 교환하고 하는 기회를 갖는게 좋겠지, 그 한번.

북(최성익) : 합의서가 이행단계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되겠죠.

남(이동복) : 자, 정말 20일만에 만났는데 그동안 상당히 오래된거 같아요.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뭐 회의를 좀 시작하십시오. 우리측에 오늘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제가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늘 상의드리는데 하지만 회의의 공개, 비공개 형태문제를 먼저 상의를 해

야 되겠는데 무슨 의견이 있으십니까?

북(백남준) : 그저 뭐 우리는 이선생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남(이동복) : 지난번에 한번 그 공개를 했죠, 우리가? 『통일각』에서 한번했으니까.

북(백남준) : 공개야 세번했지. 비공개를 한번하고. (웃음)

남(이동복) : 아니, 아니.

북(백남준) : 아, 비공개 세번하고 공개한번 했는데.

아, 비공개 세번하고. 예, 예.

남(이동복) : 『통일각』에서 한번 공개했었으니까 『평화의 집』에서 한번쯤 공개하죠, 뭐?

북(백남준) : 아, 그렇게 하죠. 반대없어요.

남(이동복) : 그래서 한번씩, 그렇게 합시다.

북(백남준) : 반대없어요.

남(이동복) : 그러면 우리가 공개회의로 합시다라는 장내는 조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측 지역에 오셔서 하는 회의니까 관례에 따라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거(우리측 기초발언문) 좀 드리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측 기조발언〉

백남준 위원장!

그리고 북측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두번째로 남북정치분과위원회 회의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귀측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오는 9월 15일부터 평양에서 열기로 한 제8차 고위급회담 이전에 남북화해분야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이행기구인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의 이러한 쌍방간의 합의사항에 따라 우리측은 지난 5월 19일 제4차 회의에서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에 관한 합의서(안)』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를 각각 새로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귀측도 같은 취지에서 제4차 회의에서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수정안)』를 새로 제시하였으며, 다만 남북화해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서(안)을 새로 제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번 제4차 회의에서는 새로 제시된 쌍방의 제안을 놓고 대체적인 토의만을 진행하였으며, 먼저 부속합의서부터 토의·해결하고 그 후 공동위원회문제를 협의·해결한다는데 원칙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우리 정치분과위원회에 맡겨진 과제들의 중요성과 방대한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나는 향후 3개월이란 과제해결의 기간이 결코 여유있는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북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와 공동위원회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토의·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 정치분과위원회 회의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이며 그리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귀측은 지난 제4차 회의에서 새로 내놓은 우리측 합의서(안)에 대해 분열고착화를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특수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는 등 몇가지 비판의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나는 귀측의 이러한 발언들이 우리측 합의서(안)을 깊이 있게 그리고 충분히 연구·검토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측 진의를 잘못 해석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귀측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측 제안의 기본취지와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부속합의서의 형식문제, 즉 귀측이 말하는 부속합의서의 구조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견해입니다.

우리측이 지난번 회의에서 새로 제안한 부속합의서(안)은 총 7장 33개 조와 2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속합의서(안)은 남북화해분야를 단순히 『구체화』한데 불과한 귀측

수정안과는 달리 완전한 『구체적 이행대책』을 담고 있으며, 지금 당장 공동 위원회에 넘긴다 하더라도 곧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8조와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는 각 분과위원회의 임무가 남북기본합의서를 단순히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부문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측 부속합의서(안)의 체제와 구조는 이러한 쌍방간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화해분야의 각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 이행대책』들을 담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부속합의서의 형식문제 즉 구조문제에 관한한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우리측 합의서(안)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토의를 진행시켜 나가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다음으로 나는 우리측 부속합의서(안)의 각 장과 각 조항에 대한 기본취지와 그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장 총칙 부분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 화해분야의 구체적 이행·준수 대책을 담는 부속합의서를 마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부속합의서의 분명한 목적을 밝히는 것과 함께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이후 남북간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에 관하여 남북쌍방이 인식을 같이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관한 인식을 함께 함이 없이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조항들을 이행·준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그 전문에서 남북기본합의서하에서의 남북간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의 이 대목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남북간의 관계는 쌍방간의 직접적인 관계의 차원에서는 서로 다른 별개의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 즉 국제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하에서의 남북관계는 비록 남북이 아직 하나가 되지는 아니했지만 서로 화해하고 불가침하며 교류·협력하는 『민족내부 관계』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이후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 존재하는 정치실체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칭한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쌍방의 당국을 대표하는 총리들이 합의·서명하였고 각기 자기측 지역에서 이를 발효시키는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충족시켰으며, 최종적으로 쌍방의 최고당국자가 재가하여 발효시킨 문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의 서명란에서 쌍방은 쌍방 총리들의 직책과 관련하여 쌍방의 국호를 공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쌍방은 한반도의 남과 북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치실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두 정치실체가 바로 남북기본합의서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현 시점에서 남과 북은 하나가 아니라 분단되어 있는 개체이며, 남북관계는 이 두 개체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분명한 인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북기본합의서는 이같이 이루어지는 남북관계가 분단고정적 관계나 분단지향적 관계가 아니라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함으로써 쌍방은 하나의 과도적 상태인 이 『특수관계』속에서 분단조국의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지향적 관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비록 남북쌍방이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짚어야 될 또하나의 중요한 현실은 남의 대한민국과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작년 9월 각기 별개로 국제연합 회원국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연합 헌장에 의하면 독립된 주권국가만이 회원국이 되게 되어 있으며 남북쌍방이 각기 회원국이 되었다는 것은 쌍방이 다같이 이같은 국제연합 헌장의 조건을 수락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명백한 사실에 토대를 두고 볼 때 남북기본합의서하에서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남북간의 『특수관계』는 이론의 여지없이 다음과 같이 정리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즉 남북관계는 한편으로는 국제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관계이면서도 다른 한편 국제적으로는 국제법상의 개별적 주체인 국제연합 회원국간에 형성되는 관계라는 2중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분단조국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어느정도의 불편은 감수하더라도 이상과 같은 2중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 테두리 안에서 7.4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을 정확하게 준수하면서 첫째로 정치적·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둘째로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셋째로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는 등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측 부속합의서(안) 제1장 제2조의 ①, ②항은 바로 이같은 남북간의 합의내용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남북기본합의서 여타조항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의 기초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장 체제(제도) 인정·존중과 내부문제 불간섭 부분입니다.

우리측 부속합의서(안) 제2장 체제인정·존중과 내부문제 불간섭은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 및 제2조와 관련한 구체적 이행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와 제2조는 다같이 남북관계의 정치적 측면을 규율하는 조항들로 그러한 뜻에서 선전문제에 관한 제3조, 폭력문제에 관한 제4조, 군사문제에 관한 제5조, 대외문제에 관한 제6조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부속합의서에서 이 두 조문을 하나의 장으로 묶는 것은 조항의 특성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조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 정부의 해당 지역에서
의 관할권을 존중한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이 각기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내부문제에 간섭하
지 않는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기 상대방
정부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남과 북이 상호관계를 발전시키고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원만하게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및 상호관계의 주체인 쌍방
정부의 권능에 대한 존중 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4조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
도) 및 법질서를 존중하며 이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와 관련해서 설
명드리겠습니다.

사상과 체제를 달리하고 있는 남북쌍방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려면 먼
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체제의 차이를 인정하
고 상호 실체를 존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쌍방의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의 체제는 다원주의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며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반면에 북의 체제는 귀족의 사회주의 헌법에 의한다면, 프롤레타리아 독
재를 실시하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
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행 ·

준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는 서로 다른 체제와 그러한 체제를 떠받쳐 주고 있는 상이한 법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법질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선행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서로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법률실무협의회』가 반드시 설치·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측 부속합의서(안) 제8조에 명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제5조 『남과 북의 어느 일방도 국제적으로 다른 일방을 대표하지 아니하며, 다른 일방을 대리하여 행동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우리측 부속합의서(안) 제1장 총칙에서 남북사이의 특수관계를 대외적으로 국제연합 회원국간에 이루어지는 상호관계라고 규정한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현재 전세계 많은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며 많은 국제기구에도 가입하고 있으면서 각기 이들 국가와 국제기구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각자의 대표권을 행사해온 엄연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이 조항의 설치근거는 자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6조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의 외교정책과 외교행위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설정하게 된 취지는 남북기본합의서 제2조의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라고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내부문제 불간섭에 관한 이행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교정책의 수립이나 이에 따른 제반 외교행위는 정부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다른 정부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확립된 국제법상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국제연합헌장 제2조 ⑦항에서 『본질적으로 국내 관할권에 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간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장상의 제규정 준수라는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7조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이 제3국과 맺은 쌍무적·다무적 관계를 존중하고 이에 간섭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제안한 취지도 남북기본합의서 제2조의 내부문제 불간섭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려는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약이나 협정은 국제법 주체간의 약속으로서 이를 성실히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 관행으로 볼 때도 당사자간에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면 당사자에만 그 효력이 미치며 제3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국제법상의 원칙이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4조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장 비방·중상 증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분야의 제3조 비방·중상 증지 조항은 남북간에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구축의 기초가 되는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호 체제가 다른 남북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서로 엇

갈려 있는 아주 복잡한 사안인 것입니다.

이같은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성격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성을 감안할 때 비방·증상 중지문제를 협의한데 따라 그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사안의 완급을 가려서 쌍방간의 합의·실천이 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쌍방은 필수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비방·증상의 적용대상은 무엇이고 그 행위의 주체는 누구이며, 그 수단과 방법은 무엇이고 비방·증상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가와 같은 비방·증상의 개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명백하고도 실천성을 보장하는 이행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체적 개념을 정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우리측 부속합의서(안) 제9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 모두 7개 조항을 설정하고, 제16조에서는 그 이행기구로서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비방·증상중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제9조 『남과 북은 비방·증상 중지의 적용대상을 우선 상대방의 특정인과 체제 및 정책으로 한다. 상대방의 체제라 함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 및 법질서를 말한다』는 것은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남북이 상호 체제가 다름으로 해서 야기되

는 상이한 법적·제도적 문제와 같은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비방·중상 중지의 문제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비방·중상 중지의 적용대상은 상대방의 최고 당국자와 쌍방이 합의하는 인사 등 『특정인』과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제』, 그리고 상대방 정부 또는 집권정당의 『정책』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제10조 『남과 북은 비방·중상 중지의 행위주체를 쌍방 국가기관과 집권정당 및 공영 언론기관을 포함한 공공단체로 한다』는 것은 행위주체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비방·중상 중지의 행위주체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으로서 앞으로 많은 토의가 필요합니다.

행위주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의 정신에 따라 상대방에 존재하는 실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토대위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공통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현실성있는 대책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는 다양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어 민간언론기관들의 자유로운 언론·출판활동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며, 헌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는 이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거나 규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방·중상 중지의 행위주체는 쌍방이 상호체제를 인정·준중하기로 한 합의사항에 따라 쌍방의 국가기관과 집권정당 및 공영언론기관을 포

합한 공공단체로 정하자는 것이 우리측 입장입니다.

다음은 제11조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귀측도 우리측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남북화해와 신뢰조성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과 상징성을 생각해 볼 때 무엇보다도 먼저 상대방 최고당국자 등 특정인사에 대하여 『괴뢰』, 『역도』 등과 같은 비방행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특정인』의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특정인』을 『쌍방의 최고당국자 및 쌍방이 합의하여 지정한 인사로 한다』고 하는 것을 명시한다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제12조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 정부를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제13조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의 법질서와 각종 정책을 왜곡하거나 이에 관한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주체이자 상대방의 법질서와 주민을 대표하는 상대방 정부에 대한 비방·중상 행위를 중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의 정신에 따라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 그리고 상대방 정부와 집권정당의 각종 정책에 대해서도 이를 존중해야 하는 만큼 그에 대한 왜곡·허위사실의 조작·유포행위 등은 마땅히 규제하여야 하며, 이는 남북간의 폭넓은 신뢰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제14조에서 앞서 말한 제11조, 제12조, 그리고 제13조의 각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오늘날 남북화해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남과 북은 과거의 냉전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화해와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공동의 노력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해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남북간에 상호 이해 증진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정보와 지식의 전달통로를 열어놓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측 입장입니다.

이는 귀측이 제시한 『객관적 보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지만 『객관적 보도』라고만 규정할 경우 남북간의 실제 해석에 있어서 많은 의견차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또 그 실행에 있어서도 새로운 장애요인이 될 소지가 다분함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제15조에서 앞서 말한 제11조, 제12조 그리고 제13조의 각 규정에 따라 규제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행위주체의 수단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해석과 실천에 있어서 상호 오해의 소지를 없애주는데 필요한 조항입니다.

끝으로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비방·중상 중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는 조항은 이미 그 필요성을 앞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4장 파괴·전복행위 금지 부분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4조에는 남북쌍방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파괴

• 전복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수많은 폭력사태와 파괴·전복행위로 말미암아 빚어진 남북 간의 불행했던 경험에 비추어 폭력을 배격하고 민족적 과제인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기본합의서의 핵심적 내용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대책은 쓰라린 과거의 민족적 경험을 염두에 두고 상호 금지되어야 할 행위들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천성의 보장과 상호신뢰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모호하고 추상적인 용어 나열로 시종한다면 그 용어해석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이로 실천의 장애요인만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측 부속합의서(안) 제17조에서 파괴·전복행위를 7개 항으로 분류한 것은 바로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측 안 제17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반드시 금지 하여야 할 파괴·전복행위의 기본적 유형을 구체화했으며, 제6호와 제7호에서는 예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파괴·전복과 그 선동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포괄규정을 둠으로써 실천성을 완전히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북쌍방은 각기 자기측 및 상대측 지역 또는 제3국을 막론하고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단체나 조직도 결성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지원, 조장, 고무, 비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측은 이러한 취지에서 제18조와 제19조 및 제20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측은 제21조에서 『국제테러 방지에 관한 모든 국제협약을 이행·준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국제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그간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쌍방은 국제연합에 함께 가입한 같은 회원국으로서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평화애호정신에 입각하여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5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22조에서 『남과 북은 현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1991년 9월 제46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정착을 위하여 남북은 첫째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둘째 군사적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군비감축 추진, 셋째 사람과 물자,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 등 평화 3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이러한 평화 3원칙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또한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간의 역사적 합의문건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모든 조항을 성실히 이행·준수함으로써 남북사이에 공고한 평화상태를 실

질적으로 이룩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제23조에서 『남과 북은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현 군사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함으로써 『상태적』으로는 보장되나, 이러한 평화상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군사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완벽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은 곧 현 정전상태를 남과 북이 주체가 되어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군사정전협정의 적절한 대체방안은 반드시 남과 북이 당사자가 되어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또한 군사정전협정 제5조 62항에 의하면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절한 협정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와 정전협정의 제5조 62항에 의거하여 현 군사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방안은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강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제24조에서 현 정전상태가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

태로 전환될 때까지 남북쌍방이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3개항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현 군사정전협정의 준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전협정의 관리자의 일방인 유엔군 사령부의 지위를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만일 유엔군 사령부의 지위를 변경하려 한다면 이는 곧 현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둘째, 91년 3월 우리측 장성의 유엔군측 수석대표 임명을 계기로 귀측이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개최를 기피함으로써 군사정전위원회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데,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구이므로 그 기능은 즉각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측 장성의 수석대표 임명은 정전협정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측은 군사정전위원회를 정상화하는데에 즉각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중립국감독위원회도 군사정전위원회와 함께 현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양대 중추기구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그 기능과 활동은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귀측이 중립국감독위원회 일부 구성대표단에 대해 철수를 종용하는 등 중감위 활동을 제약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음은 제6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부분입니다.

우리측은 제6장 부분을 제25조에서부터 제31조까지의 7개 조항으로 구

성하였습니다.

우선 제25조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비방·중상 중지』 조항을 설정한 것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호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제무대에서 남과 북이 서로 비방하고 중상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는 것은 민족적 자존심을 우리 스스로가 끌어 내리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다음 제26조의 제안취지는 해외에 나가 있는 남북의 공관간에 협의창구를 개설·운영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촉진해 나가자는데 있습니다.

남북이 동시에 외교공관을 갖고 있는 나라는 현재 48개국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의 공관간 협의창구의 개설·운영은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제27조는 뉴욕, 제네바, 비엔나 등지에 국제연합 산하기구가 다수 소재하고 있고 또한 국제회의가 빈번히 개최되고 있는 점과, 특히 이들 국제기구에서 우리민족 전체의 이익에 직결되는 중요한 국제적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어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음 제28조는 국제무대에서 민족적 이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특히 국제회의에서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에 대한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을 우리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회의에 참가한 남북대표단간에 어떠한 문제가 우리민족의 이

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설문 및 회의에 대비한 상호입장과 의견을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민족적 권익의 옹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는 물론 공동보조를 취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널리 논의되고 있는 환경, 해양, 기상, 보건 등의 분야는 세계적인 관심사인 동시에 우리 민족의 이해와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남북이 공동보조를 취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셋째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발효로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이니 만큼 국제회의 석상에서도 상호 영문호칭의 조정을 통해 서로 멀리 떨어지지 말고 옆좌석에 앉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화해와 함께 통일을 지향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음 제29조의 취지는 국제기구의 활동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분야를 예시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협조방안을 마련하자는데 있습니다.

첫째, 국제기구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기구에 가입하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일방이 가입을 추진할 경우 상대방이 이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남북의 어느 일방이 국제기구 임원국에 입후보하거나 사무국에 직원을 진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민족적 이익실현이라는 견지에서 서로 지

원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남과 북의 어느 일방이 국제회의나 국제대회 등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우리 민족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만큼 이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제30조를 제의한 취지는 최근 남과 북이 각종 국제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이나 이들 국제기구를 통하여 각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에 따라 이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서 두만강유역 개발사업이,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에서는 귀족에 대한 경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밖에 귀족이 새로 가입한 국제연합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를 비롯하여 국제연합환경계획(UNEP)등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남북간 공동협력사업의 추진전망이 매우 밝다고 봅니다.

끝으로 제31조에서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남과 북이 함께 보호하자고 한 것은 현재 세계곳곳에 약 500만명 이상에 달하는 우리 동포가 퍼져 살고 있으며, 이들은 소수민족으로서 권익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한 제안입니다.

아직 일부지역의 동포사회에 남아있는 대립과 갈등요소들을 화해와 단합의 정신으로 극복해 나가는데 남북이 협력함으로써 우리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제 7 장 수정 및 발효 부분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더이상 별다른

설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나는 우리측 부속합의서(안)의 조항별 기본취지와 그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지난 제4차 회의에서 귀측이 제시한 부속합의서의 수정안에 대한 우리측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귀측은 제1차 회의시 내놓았던 10개조 23개항으로 된 이른바 포괄적 단일부속합의서(초안)을 9개조 30개항으로 수정하여 제4차 회의에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측의 부속합의서 수정안은 본질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아직도 미흡한 내용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부속합의서(초안)에서 내포하고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귀측의 수정안이 여전히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준수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담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순히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며, 협상과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주장들까지 다시 들고나와 남북기본합의서 그 자체를 개작·변질하려는 구도를 계속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귀측 수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상의 중요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 우리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귀측 수정안 제1조 체제(제도) 인정·존중의 각항들 입니

다.

남북짱방은 남북기본합의서 제 1 조에서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엄숙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귀측 부속합의서 수정안 제 1 조의 각항들은 상대방 체제를 인정
• 존중하기는 커녕 오히려 상대방 체제를 부정하고 배척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적해야 할 점은 귀측 수정안 제 1 조 ①, ③, ④항에 남북기본합의서 협상과정에서 귀측이 스스로 철회했던 『사상』표현을 다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귀측도 아다시피 남북짱방은 남북기본합의서 협상과정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사상』이라는 표현을 합의서 문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남북의 총리가 서명하고 최고당국자가 재가하여 발효시킨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분명히 제외시켰던 『사상』이라는 표현을 새로 부속합의서에 규정하려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사항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며, 분과위원회의 임무를 벗어나는 부당한 일입니다.

또한 귀측 수정안 제 1 조 ②항은 『각기 상대방의 법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설정하면서도 그 단서조항으로 『남북합의서의 화해정신과 조국통일 위업에 배치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조건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 1 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호 체제인정과 존중의 핵

심은 법질서 존중에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모든 법질서를 절대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단서도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귀측 수정안 제2조 내부분제 불간섭 부분입니다.

남북쌍방은 남북기본합의서 제 2 조에서 서로 상대방의 내부분제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수정안 제 2 조 ①항과 ②항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 및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면서도 ③항과 ④항에서는 이에 간섭하는 예외조항을 둬으로써 ①, ②항을 사실상 원인무효화시키는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귀측 수정안 제 3 조 비방·중상 중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선 이 조항의 6개항에 담겨진 용어들 중에는 구체성과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막연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③항의 『상대방 자극』 및 『불신과 적대감 고취』, ⑥항의 『상대방과의 대결고취』등과 같은 표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같은 표현들은 그 개념이 불확실하고 모호하여 주관적이거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자극을 받았다』든가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한다』라는 등의 일방적인 주장을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표현들이 것입니다.

또한 귀측의 수정안 제 3 조 ①항은 『관영, 민영을 막론하고 어떤 언론기관이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부가 제약하는 어떠한 표현도 남북간의 합의문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는 남북간 체제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비방·중상 중지의 행위주체를 『쌍방 국가기관과 집권정당 및 공영 언론기관을 포함한 공공단체』로 제시한 것입니다.

넷째는 귀측 수정안 제 4 조 파괴·전복행위 금지 부분입니다.

귀측은 이 조항의 ④항에서 『제3국 또는 그의 단체가 상대방을 반대하여 제재나 압력을 가하려는 일체 행위에 합세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외교적 자주권행사를 제약할 뿐 아니라 국제연합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회원국으로서의 권한에도 제약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규정입니다.

다섯째는 귀측 수정안 제 5 조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부분입니다.

귀측도 아는 바와 같이 남북기본합의서 제 5 조는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측 수정안 제 5 조에는 『남북사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남북쌍방은 남북기본합의서 협상과정에서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라는 표현을 명기할 것에 합의함으로써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는

당사자가 바로 남북쌍방임을 분명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명기된 이 중요한 문구를 슬그머니 누락시킴으로써 우리측으로 하여금 귀측의 진의가 과연 무엇인지 많은 의혹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귀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측은 수정안 제 5 조에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 이행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측 제안처럼 남북기본합의서 제 5 조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부속합의서에 재규정하여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최근 휴전선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내에서 귀측의 무장병력 침투에 의해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당연히 즉각 소집되어 그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함은 물론 확고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군사정전위원회의 소집에 불응하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은 물론 쌍방이 엄숙히 발효시킨 남북기본합의서 제 5 조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귀측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소집에 즉각 응함은 물론 이 조항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이행대책 방안을 내놓는 등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실천의지

를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는 귀측 수정안 제 6 조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부분입니다.

귀측은 국제무대에서의 대결중지 및 상호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에서 모두 8개의 세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8개 세항중에는 국제적인 상식과 규범들에 어긋나고 현실과 괴리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측은 수정안 제 6 조 ③항에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회의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귀측의 이러한 제안은 『특수관계』를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의 정신은 물론 국제연합헌장 규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작년 9월 귀측이 우리와 함께 국제연합에 동시가입한 현실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⑥항과 ⑦항에서 귀측이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과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개정 또는 폐기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귀측이 제안한 제 4 조 ④항의 『파괴·전복행위』부분, 우리측이 제안한 제 2 장 제 7 조의 『쌍방이 제3국과 맺은 쌍무적·다무적 관계의 존중』부분에서 각각 우리측 입장을 이미 충분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귀측 ⑥항은 국제연합 헌장상의 규정에 저촉되며 ⑦항은 남북기본

합의서 협상과정에서 귀측이 이미 철회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하여 드립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나는 남북기본합의서 화해분야의 구체적 이행·준수 대책을 담은 우리측 부속합의서(안)의 각 조항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귀측 부속합의서(수정안)에 대하여 각 조항별로 우리가 검토한 의견을 중요한 조항에 우선 한정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시간의 제약 때문에 아직도 우리측 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과 또 귀측 안의 내용에 대한 우리의 검토의견 설명에 불충분한 점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같이 불충분했던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분과위원회 진행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설명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처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치분과위원회 소관분야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과 준수대책을 담은 부속합의서로서는 우리측 안이 형태로나 내용으로나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일 뿐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의 요구에도 부합되도록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 회의에서 우리측 부속합의서(안)을 토대로 축조토의에 들어갈 것을 제의합니다.

이러한 축조토의 과정에서 귀측 안중 우리측 안과 유사한 조항들은 상호 비교·검토하는 가운데 서로 합의하는 쪽으로 조항을 정리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나는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해야 할 부속합의서의 시한이 불과 3개월 정도 앞으로 박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 모두의 주의를 환기 시킵니다.

우리는 이 길지않는 시간을 잘 선용해서 우리에게 부과된 임무를 차질없이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북(백남준) : 제가 이제 이위원장이 발언한 문제와 관련해서 몇가지만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제 발언한 다음에 문제토의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이위원장의 발언가운데서 그 무슨 무장병력 침투사건이요 하면서 무슨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군사정전회의에 불참했는데 이거 즉시 나와야 된다, 이런걸 말씀하였는데, 이걸 이위원장이 알고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하는 소리인지 이거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습니다.

이건 분과위원회 회의를 또 격론장으로 만들고, 북남합의서 이행에 제동을 걸고, 남북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원점으로 돌려 세우려는 그런 행위의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이위원장이 북남화해를 위한 정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이런 직분을 망각하고 있는게 아니가. 위원장은 회담장 밖에서 무슨 대북강경대응이요, 그 무슨 핵문제를 가지고 분별없는 이런 도발소동을

별렀는데, 오늘 회담장 안에서도 또 대화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자극하고 모독하는 이런 발언들을 함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시합니다. 이위원장이 좀 자제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회담장 밖에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회의마당에서 이런거 안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북남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 그런 공언에 대해서 우리는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무장병력침투사건이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건 우리와 아무런 인연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따위짓을 하지 않습니다.

귀측에서 이런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거든랑 돌아가서 집안가서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다음 정전위원회에 불참문제에 대해서 운운했는데 귀측이 이 발언은 정전위원회에 그 협약에 대한 전면 위반입니다.

우리는 미국측으로부터 정전위원회 회의를 하겠다는 공문서를 받은 것도 없고 전화통지문을 받은 것도 없고, 그 어떤 편지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어느날 귀측군장성이 자칭 수석위원이라 하면서 슷한 기자까지 끌고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에 나왔는데 이건 세상의 웃음거리다. 이건 사실소가 양천대소할 일입니다.

우리는 정전협정 체약의 일방도 아니고 또 유엔군 성원도 아닌 귀측군대의 장성을 우리는 유엔군측 수석위원으로 인정한 바 없습니다. 이걸

계획적인 연극입니다.

우리는 귀측이 그 발언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지위는 변경시킬 수 없다. 그러면서도 또 귀측이 유엔군측의 수석위원을 담당 했는데 그걸 우리가 인정하라는 식인데 이게 얼마나 자가당착적인 주장인가.

우리는 귀측이 이 북남합의서가 발효돼서 리행단계에 들어선 때에 무슨 무장병력침투사건이요, 무슨 정전위원회 불참이요 하고 이거 벽적고 아대고 소동을 피우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는 이거 엄중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북남합의서를 이행하고 북남화해를 위한 의사가 있다고 하면 대화상대방을 걸고 벌리는 이런 무모한 소동들을 걷어 치워야 됩니다. 분별있게 처신하는게 좋습니다.

그다음 귀측이 부속합의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를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측에서 아무런 수정도 없이, 그래도 우리가 4차회의 때 그래도 근본적으로 귀측이 부속합의서에서 어떤 문제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걸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응당히 우리는 오늘 회의에서 귀측에서 좀 그래도 이걸 접근시켜 가지고 나오는 그런 성의를 보였어야 할 것인데 아무런 수정도 없이 들고 나온데 대해서 우리는 매우 이거 북남합의서 리행의지가 없고, 우리 분과위원회에 그런 진전에 타당한 이런 말하자면, 의의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털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

리는 이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귀측이 이제 쪽 귀측 부속합의서의 합리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는데 그 여러가지 많은걸 제가 발언하면서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이따 내용토의 때 저희들 입장 밝히겠는데, 우선 분열고착적이고 민족주체성이 결여된 이런 내용들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합의가 안됩니다.

귀측에서 1장 총칙이라는걸 가지고 나와서 최고당국자가 수표를 하고, 쌍방총리들이 수표를 하고 그다음에 합의문건 밑에다 대한민국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국호랑 다 쓰지 않았는가, 그 국호는 왜 썼는가, 현실적으로 그 국호밖에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걸 쌍방 사이에 공식문건에서는 우리 쌍방이 상통하는 이런 문건에서는 이걸 그렇게까지는 달리 쓸 수가 없다 말입니다.

쌍방이 호상 양해를 하고 쓰는거란 말입니다. 이거이 어떻게 돼서 쌍방의 실체를 인정하는 그런 징표가 되며, 이것이 그것의 기준이 되겠는가. 그 외의 것에 특수관계의 설명이, 그건 우리 전번에 입장을 명백히 했지만,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그건 필요없는 겁니다, 그 설명자체가. 예, 필요없습니다. 그 장 자체가 필요없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외에 귀측에서 분열고착적이고 민족 자주적 립장이 결여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3국과의 관계에 그냥 어떻게 하겠다, 그냥 존중하라 이런 식인데.

그다음에 두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귀측의 이런 제안을 통털어서 이렇

게 한마디로 보면 매우 불철저하게 된 부속합의서다. 무슨 귀측 체제의 특성을 운운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식으로 됐는데. 이걸 세월없이 끝자는거고, 북남합의서를. 철저히 말하자면 가장 빠른시일에 이걸 하자는 그런 의자가 없는 겁니다. 이걸 그저 비본질적인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세월없이 끝자는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귀측에서 누군가 철회했던걸 우리 들고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더러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철회했던걸 이번 부속합의서안에 담아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귀측에서 문제로 삼는 사상문제, 그다음에 제3국과의 관계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했던 바는 있습니다. 합의서 채택과정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철회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때문에, 우리는 그건 그전에도 철회 안하는거고 오늘도 철회 안하는 거고, 앞으로도 그건 철회 안합니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북남합의서에다 그걸 명기 안했느냐는 그쪽의 물음이 제기될겁니다. 그것은 북남합의서에 다른 조항들과 연관된 그런 조항들의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명문화하고 거기다 명기화하는 걸 우리가 그때 고려했을 따름이지 우리 철회했던 바가 없습니다. 실지로 철회했던 걸 들고 나온건 그쪽입니다.

이 당사자 원칙이라는게 모든데 당사자 원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그다음에 3국과의 이런 일체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은 상호간에 의무를 지니고 있는거고 그 어떤 3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거다 그러는데 그것이 뭐니까?

그다음에 지금 귀측의 제안들을 보게 되면 통일에 저촉되는거, 북남합의서 리행에 저촉되는거, 북남관계개선에 저촉되는, 민족적 리익에 저촉되는 그런 조항들은 부속합의서에 없어야 된다.

그런거는 법률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도 다 그건 제거를 해야 되고 타국과 맺는 것도 다 그건 제거를 해야 되고, 우리 쌍방간에 합의서 규정하는데서도 그걸 넣으면 안된다. 이런걸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쪽에서는 그걸 들고 나옵니다. 이거는 결국 귀측이 철회했던걸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준비한 발언을 하고 내용토의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저희들 입장을 좀더 밝히겠습니다.

〈북측 기본 발언〉

남측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제 7 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이룩된 합의에 따라 제 8 차 북남고위급회담이 열리는 오는 9월 15일 이전에 북남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며 《북남화해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킬 사명을 안고 정치분과위원회 제 5 차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쌍방은 지난 제 4 차 회의에서 귀측이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 1 장 북남화해분야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하나의 포괄적인 부속합의서안과 하나의 화해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안을 내놓음으로써 드디어 정치분과위원회에서 채택발효시킬 2개의 합의서의 형식문제에서 의견일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북남합의서의 화해분야의 리행문제를 둘러싸고 존재해오던 쌍방사이의 의견차이의 하나가 해소되게 되었으며 제 8 차 북남고위급회담이 열리기전까지 정치분과위원회에서 부속합의서와 공동위원회 문제를 타결지울수 있는 새로운 전망을 내다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귀측이 늦게나마 여러개의 부속합의서작성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화해부문의 하나인 포괄적인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동의해나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속합의서를 하나 작성하느냐 아니면 여러개 작성하느냐 하는 형식문제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를 본 오늘 우리앞에는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어떻게 일치시키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남합의서 화해부문의 합의사항을 하루빨리 리행하기 위하여 이미 제 1 차 회의때 부속합의서안을 내놓았고 지난번 4차회의때에는 귀측의 주장을 폭넓게 고려한 수정안을 내놓은 성의를 보이였습니다.

쌍방이 내놓은 부속합의서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보면 거기에는 서로 공통되는 점도 있는 반면에 차이점도 적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위에서도 말하였지만 부속합의서안의 형식이 하나의 포괄

적인 단일합의서로 되어있는것이며 내용에서 같거나 어슷비슷한 조문들이 더러 있는것입니다.

우리측이 부속합의서안의 제도인정, 존중 문제에서 상대방의 정치제도, 경제제도, 문화제도의 인정, 존중과 법질서의 존중을 규제한것은 귀측의 안과 공통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측의 합의서안이 내부문제불간섭에서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제도와 질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과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고 규제한것은 귀측의 안과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방중상중지와 관련하여 비방중상의 주체, 대상 그리고 그 중지수단을 규제한것도 일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파괴전복행위금지문제, 정전상태의 평화상태에로의 전환문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문제에서는 부분적인 련관성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속합의서안의 수정, 보충과 관련한 조항에서는 문장 표현에 이르기까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처럼 쌍방의 부속합의서안 내용가운데는 서로 공통점과 유사성이 있는 조항들을 한데 모아보면 대략 20여개조나 됩니다.

공통성이 있는 조항들은 앞으로 내용토의를 심화시키고 문안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쉽게 의견일치를 볼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쌍방부속합의서를 비교해보면 구성체계에서와 내용에서 아직 현

저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귀측은 북남합의서의 기본조항을 무시하고 《총칙》이라는 장을 따로 설정하고 그 무슨 《특수관계》문제를 제기하였는가 하면 북남합의서 제 1 조와 제 2 조를 합하여 한개의 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특수관계》문제를 부속합의서의 제 1 장으로 설정한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며 따라서 지금의 제 2 장을 분리하여 부속합의서의 조항 내용과 순차대로 제 1 장과 제 2 장으로 다시 구성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합니다.

쌍방 부속합의서안에서의 차이점은 응당 포함시켜야 할 내용들을 넣지 않았거나 반면에 불필요한 조항들을 삽입해 넣는데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량측부속합의서안 가운데는 이쪽에 있는것이 저쪽에 없고 저쪽에 있는것이 이쪽에 없는것이 무려 25개조항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속합의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것으로서 우리측안에만 있는 조항도 10여개조항이나 됩니다.

량측부속합의서안의 내용상 차이는 물론 작은것이 아니며 그것은 북남화해에 립하는 쌍방의 근본립장상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량측부속합의서안에 대한 의견조정은 불피코 서로 상반되는 두 립장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공통점을 찾는 과정으로 되여야 할것입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는 우선 북남화해에 립하는 귀측의 립장에 대하여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귀측의 부속합의서안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는것은 첫째로, 전반적 내용이 현상고착과 분렬을 지향하고있는 것입니다.

귀측은 합의서안 제 1 장 총칙에서 북남사이의 관계가 내적으로는 민족 내부관계이며 대외적으로는 국제연합회원국간의 관계라고 하면서 이러한 과도적인 2중적인 특수관계가 북남합의서의 모든 조항들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대책의 《기초》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귀측의 이 주장과 론법은 결국 《실체인정론》으로부터 출발한것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북과 남이 유엔에 각기 들어간 문제를 놓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귀측의 부당한 분렬주의적립장으로 하여 초래된 비정상적인것으로서 통일로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과도적인 조치로 되며 《실체인정》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북과 남이 각기 유엔에 들어간 다음 그것이 가져다줄 수 있는 부정적측면을 예견해서 북남합의서를 작성할때 전문에다 명백히 북남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사실을 규제하였던 것입니다.

이 문장 가운데에서 북남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하는 내용은 우리의 주장에서 귀측이 받아들여서 서문에 밝힌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것은 사실상 공담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제도를 인정하는 존중한다고 합의한 이상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실체나 체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야에서 북남회담을 하는것 자체가 귀측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한다는 엄연한 증거입니다.

만일 우리가 귀측의 실체를 부인하거나 귀측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립장에 서있다면 북과 남의 대화나 합의서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것입니다.

이처럼 명명백백한 문제를 가지고 화해하고 통일하려는 지금에 와서 무엇보다때문에 재론하며 그것을 굳이 쌍방이 합의하여 문건으로 공식채택하려 하는지, 또 이러한 합의문서가 북남 화해와 통일에 과연 어떤 도움을 준다는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귀측의 주장이 명백히 통일을 지향하기로 한 북남합의서의 기본정신을 뒤집고 북과 남이 합의에 의하여 현분렬상태를 합법화하려는 반통일적립장의 집중적표현이라고 인정합니다.

둘째로, 귀측합의서안의 문제점은 그것이 북남화해를 철저히 실현할수 없게 하는 반복과 대결을 지속시키는 안이라는데 있습니다.

북남화해를 실제적으로 실현하자면 합의서의 내용을 화해정신에 맞게 꾸려야 하며 그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는 조항은 철저히 배제해야 할것입니다.

북남화해를 실현하는 부속합의서는 마땅히 민족적 화해와 통일에 이바지하는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북남사이의 합의에 따라 상대방의 제도를 인정, 존중하여야 하지 만 무턱대고 그렇게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속합의서안에서 상대방의 제도와 함께 법질서를 인정,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북남합의서의 정신과 조국통일위업에 배치되거나 저촉되지 않는한에서 그렇게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모든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북남합의서의 정신에 부합되게 제거한다는데 대해서도 명기했습니다.

지금 귀측의 경우만 놓고보더라도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에 저촉되는 법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들을 그대로 두고 민족적 화해를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들은 북남합의서정신에 부합되게 응당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측은 제도의 인정, 존중이라는 이름밑에 상대방의 법을 무조건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에 저촉되는 법까지도 인정,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화상대방이며 동족인 우리를 《반국가단체》 또는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화해에 저촉되는 법들을 계속 존속시키겠다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내놓은 것입니다.

귀측이 진실로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에 관심이 있다면 령전시대의 대결의 산물인 화해와 단합, 통일에 방해되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없앨데 대한 우리의 요구에 응해나와야 할 것입니다.

귀측은 또한 비방중상중지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려는 석연한 입장을 아직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비방중상중지문제는 북남화해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긴박한 과제일뿐만아니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정치적문제이므로 어느 일방도 결코 소홀히 대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측이 비방중상중지문제와 관련하여 특정인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않는다는것을 비롯해서 관영, 민영을 막론하고 어떤 언론기관이나 그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명기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귀측은 비방중상중지의 대상을 당국이나 관영, 공영의 언론매체에만 국한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전면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있습니다.

우리는 비방중상중지문제가 7.4공동성명 발표이후 한때 리행되는듯하다가 인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데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하며 다시는 그런 좋지 못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귀측의 부속합의서안에는 비방중상중지문제뿐아니라 기타 문제에서도 북남화해를 실제적으로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수 없는 조항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귀측은 북남고위급회담테두리안에서 북남당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어떤 조직이나 단체, 개별적인인사들사이의 접촉과 대화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허용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측은 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모든 단체나 조직을 무턱대고 《파괴, 전복 단체》 또는 《반체제》조직으로 단정하면서 그들과는 그 어떤 대화나 통일론 의도 자유롭게 할수 없다고 하고있으며 만일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차 없이 《국가 보안법》을 휘둘러 처형하려 하고있습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당국이나 특정한 계급, 계층만이 아니라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입니다.

조선민족은 북에 살건, 그가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모두가 다 조국통일의 주인이며 따라서 조선민족이라면 누구나 통일애국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통일의 주체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면 서로 자유롭게 만나 대화하고 접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측은 쌍방향의로 누구는 북과 대화할수 있고 누구는 대화할수 없다고 규정하려 할뿐아니라 통일애국운동 단체들과 인사들을 탄압, 처형해도 그것이 《내부문제》로 된다고 하면서 말한마디 하지 못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규제한 귀측합의서의 조항은 통일애국단체와 조직, 각계각층 인사들의 자유로운 접촉과 통일론의의 길을 차단하고 대화를 당국의 독점물로 만들려는 구시대의 유물로서 무조건 취소되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당국이 북과 남의 민간대화를 부당하게 간섭, 방해할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로운 대화와 접촉을 적극 주선하고 장려해주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셋째로, 귀측 부속합의서안의 문제점은 그것이 아직 외세의존적인 립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조국통일은 그누가 우리 민족에게 선사해주는것도 아니며 또 누구에게 청탁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조국통일은 통일의 주체인 온 겨레가 하나로 굳게 뭉쳐 노력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수 있는 우리 민족의 자주위업입니다.

그러데 유감스럽게도 귀측은 부속합의서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의연히 외세의존립장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측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에로의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격에 맞지 않게 그 무슨 《당사자해결원칙》을 들고나오면서 미군을 남조선에 계속 붙잡아둔 채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보이고있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킬 책임있는 실제적 당사자는 다름아닌 우리와 미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당사자》로 자처하면서 미군을 그대로 둔채 《현 군사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는것은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것입니다.

귀측은 합의서안에서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을 즉각 정상화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귀측과 해결할 문제가 아닌것입니다.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되것은 미국측이 정전협정체약일방도 아니

며 《유엔군》 성원도 아닌 귀측의 군《장성》을 비법적으로 《수석위원》으로 내세운데서 야기되었습니다.

미국측이 귀측의 군《장성》을 《수석위원》으로 내세우는한 정전위원회의 기능은 언제가도 정상화될수 없을것입니다.

외세에 의존하면 민족적화해를 이룩할수 없고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면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귀측의 합의서안에서 남북이 제 3 국과 맺은 관계를 존중하며 그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한것은 민족의 단합과 리익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계속 존속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한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부속합의서작성에서 외세의존적이며 사대주의적인 자그마한 요소라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철저한 주체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할것입니다.

넷째로, 귀측의 합의서안작성에서의 문제점은 신의를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남합의서의 리행과 민족적화해를 이룩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쌍방사이에 서로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북남사이에는 회담장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달라도 안되며 어제 한 말과 오늘 하는 말이 같지 않아도 안될것입니다.

귀측이 북남합의서작성단계에서 이미 그 부당성을 인정하고 철회하였던 《실체인정》문제와 제 3 국과 맺은 관계문제 같은것을 부속합의서안에 다시 담아가지고 나온것은 누가보아도 신의있는 대화자세라고 할수 없습니다.

북남고위급회담에서 《일괄합의, 동시실천원칙》이 쌍방의 합의로 이미 기정사실화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지금에 와서 그것을 합의한바 없다고 하면서 그무슨 《건별합의, 즉각실천원칙》을 주장해나선것 역시 합의사항리행의 전도에 어두운 그늘을 던지는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합의사항리행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대결시대의 낡은 대화자세를 버리고 서로 협력하며 화해하는 립장으로 돌아서야 할것입니다.

귀측은 우리측안에 포함되어있는 사상과 제도를 부정, 적대시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제거문제, 부속합의서와 타조약과의 관계문제를 넘두에 두고 이미 《철회》한 문제를 다시들고나왔다느니, 합의사항 《위반》이라느니 하고 말하고있는데 이것은 무근거한 주장입니다.

북남합의서론의단계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논의되였던바는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철회한바 없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우리의 부속합의서안을 깊이 연구하고 그에 동의해나올 대신에 여러가지 당치 않은 구실과 리유를 들어 배척하려는것은 북남합의서의 리행을 회피하고 민족적 화해를 달가와하지 않는 태도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습니다.

남측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누구에게나 명백한바와 같이 지난 제 4 차회의에서 내놓은 9개조 30개항으로 된 우리측의 부속합의서수정안은 형식과 내용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측 부속합의서안의 합리성은

첫째로, 북남합의서 화해분야의 모든 조항들을 철저히 리행준수할수 있게 작성되었다는데 있으며

둘째로, 우리 부속합의서안의 합리성은 북남합의서의 리행을 가로막고있는 온갖 장애요인들을 명백히 밝히고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질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으며

셋째로, 우리의 부속합의서안의 합리성은 철두철미 민족자주적립장에서 통일지향적으로 작성되었다는데 있으며

넷째로, 우리의 부속합의서안의 합리성은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주의주장과 리해관계를 다같이 고려한 공명정대한 안이라는데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측이 내놓은 부속합의서안이 나무랄데없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는것을 잘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속합의서의 작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지난 4차 회의때 내놓은 수정안을 장제목을 달아 다시 내놓으려고 합니다.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 1 장 북남화해》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수정안)

북과 남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 1 장 북남화해》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대책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제도인정, 존중

제 1 조 북과 남은 상대방의 사상과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문화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 2 조 북과 남은 북남합의서의 화해정신과 조국통일위업에 배치되거나 저촉되지 않는한 각기 상대방의 법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 3 조 북과 남은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거나 적대시 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한다.

제 4 조 북과 남은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찬양하는 언론, 출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 2 장 내부분제불간섭

제 5 조 북과 남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제도와 질서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자기 의사를 상대측에 강요하는 일체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6 조 북과 남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7 조 북과 남은 민족공동의 리익과 나라의 통일, 북남합의서 리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제 5 조, 제 6 조에 저촉되지 않는것으로 한다.

제 8 조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외세의 온갖 내정간섭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제 3 장 비방증상중지

제 9 조 북과 남은 관영, 민영을 막론하고 어떤 언론기관이나 그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을 비방증상하지 않는다.

제10조 북과 남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않는다.

제11조 북과 남은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며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하거나 사실을 외곡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을 조작, 류포하지 않는다.

제12조 북과 남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보도를 비방증상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13조 북과 남은 상대측지역에 대한 삐라살포와 전연방송을 중지하며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표어를 비롯한 모든 게시물들을 제거한다.

제14조 북과 남은 상대방과의 대결을 고취하는 일체 정치행사를 하지 않는다.

제 4 장 파괴전복행위금지

제15조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파괴, 정탐, 테로, 포섭, 랑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6조 북과 남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선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7조 북과 남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그 어떤 외부의 세력이나 집단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제18조 북과 남은 제 3 국 또는 그외 단체가 상대방을 반대하여 제재나 압력을 가하려는 일체 행위에 합세하지 않는다.

제 5 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제19조 북과 남은 1953년 7월 27일부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시키기 위하여 할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공동으로 강구한다.

제20조 북과 남은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북남합의서와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하도록 한다.

제21조 북과 남은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22조 북과 남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킨 다음 조선반도에서

의 평화를 유지, 보장할 필요한 대책을 협의강구한다.

제 6 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23조 북과 남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호상비방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24조 북과 남은 대외활동에서 상대방의 리익을 존중하며 전민족의 리

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의하고 대처한다.

제25조 북과 남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회의들에 하나의 명칭, 하

나의 의식으로 가입,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6조 북과 남은 민족공동의 리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대표부(공관)

가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대표부 책임자(공관장)사이의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제27조 북과 남은 국제적인 행사들에 전민족들을 대표하여 유일대표단으

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8조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리익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제29조 북과 남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 단합과 리익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상을 개정 또는 폐기한다.

제30조 북과 남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공동으로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 7 장 리행기구

제31조 북과 남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 1 장 북남화해>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리행을 위한 《북남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북남화해공동위원회》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한다.

제32조 《북남화해공동위원회》안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는 《북남화해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구성, 운영한다.

제 8 장 수정 및 발효

제33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수 있다.

제34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월 일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연 형 목

정 원 식

우리의 새로운 부속합의서수정안은 지난 제 4 차 회의때 내놓았던 부속 합의서안을 구성체계에서 귀측안과 일치시켰을뿐 아니라 일부 조항과 문장 표현들도 타결하기 쉽게 재조정하여 총 8장 34개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나는 이번에 우리측이 내놓은 부속합의서수정안이 쌍방사이에 존재하는 의견차이를 좁히고 합의점을 모색할수 있는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안이라고 인정합니다.

사실상 우리의 이 부속합의서수정안은 쌍방이 합의한대로 그것을 오는 제 8 차 북남고위급회담전에 작성하여 거기에서 채택발효시킬 수 있는 전제를 훌륭히 마련해놓은 진전적인 안으로 됩니다.

나는 귀측이 여러모로 합리적이며 공정한 우리의 새로운 부속합의서수정안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남측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지금 온 겨레는 북남사이의 화해가 이룩되고 평화와 통일의 새아침이 하루빨리 밝아오기를 간절히 념원하고있습니다.

지난 제 7 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군사공동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공동위원회들이 발족되고 북남연락사무소가 개설되었으며 정치분과위원회에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할데 대해 합의한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화해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희망을 북돋아주었습니다.

합의서의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대화에서 신의를 지키고 대화앞에 장애를 조성하지 말아야 하며 대화가 좋은 분위기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대화자세를 바로가져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귀측은 우리에게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때 또다시 돌변적으로 그무슨 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북남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수 없다》고 공언하면서 누구에 의한 《제재》나,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재개니 하는 당치 않은 소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귀측의 이러한 대결자세는 우리에게 대한 국제핵사찰결과를 희석시키고 북남관계를 새롭게 악화시키는 방법으로 결국 새로운 국제적인 핵압력에 주패장을 만들자는 것이며, 조일, 조미 관계개선에 새로운 제동을 걸려는 것이며, 북남관계를 긴장시키는 방법으로 조성된 불안한 내부정세를 수습해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귀측의 행동은 북남관계를 또다시 원점으로 돌려세우며 정치분과회의도 진척시키지 않으려는것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매우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귀측은 이런 무책임한 언행이 어차피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모처럼 마련된 로부모 방문단의 교환을 위협에 빠뜨릴수 있다는데 대해 심사숙고 하고 올바르게 처신하여야 할것입니다.

귀측이 진실로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며 온 겨레가 지켜보고있는 로부모방문단의 교환사업을 귀중히 여긴다면 그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측이 북남대화에 대한 성실한 립장을 가지고 회의 사업에 립한다면 정치분과위원회 회의도 잘 진척될것입니다.

오는 9월 15일이전에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화해공동위원회를 발효시키는것은 우리정치분과위원회의 기본사명이며 온 겨레앞에 다진 공동의 서약입니다.

그동안 4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부속합의서의 내용토의에는 사실상 오늘이 첫시작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북과 남이 다같이 자기측의 일방적인 주의주장만을 고집하거나 절대화하지 말고 모든것을 나라와 민족의 리익,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키는 애국애족적립장에서 서로 협조하고 양보하며 공통점을 찾는다면 반드시 회의에서 좋은 결실을 이룩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정치분과위원회에서 발효시킬 화해공동위원회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량측에서 내놓은 합의서안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안, 전번에 귀측 오늘 발언에서 화해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정치”라는거만 빼 내뜨리고 “화해”라는건만 바꿔 넣으면 됩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부속합의서안토의를 먼저 하며 다음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토의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정치분과위원회 제 5 차회의가 민족적 화해와 통일에 부합되는 부속합의서를 탄생시키는데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는 의의있는 회의로 되리라는 기대를 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이동복)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백위원장 기본발언을 쪽 들으면서 보니까 우리 정치분과위원회의 부속합의서안 토의가 이제 본격적인 고비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남북간에 정치분과위원회의 부속합의서를 다루는 과정에서 남북간에 어떠한 견해 차이가 있느냐, 입장의 차이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견해의 차이와 입장의 차이가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사실은 이것을 극복, 해결하면 우리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 관계에는 아주 팔목할만한 돌파구와 진전이 마련될 것이다 라고 봤던 내용을 그대로 뒷받침해주는 말씀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백위원장이 말씀하신 몇가지 문제가 이 정치분과위원회에서, 임무로 맡고 있는 부속합의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큰 과제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순서상 제가 우리측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부속합의서안의 내용토의에 들어가는 방법을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발언에서 백위원장께서 몇가지 남북간에 입장의 차이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첫째로는 소위 『1장 총칙』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게 있는데 이것은 제가 편의상 좀 뒤로 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둘째로 우리측 합의서안의 문제점을 「북남화해를 철저히 실현할 수 없게 하는 반목과 대결을 지속시키는 안이다」라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뭘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기본합의서 1조 또 2조에서 합의하고 있는 상대방의 체제인정 존중과 또 상대방의 내부문제 불간섭 합의에 대해서 조건을 설정하고 있는 북측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는 설명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측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조건은 이걸 참 일방적인 겁니다. 왜 일방적인 것이냐 하면, 이 조건이 두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조금은 초점을 흐려서 민족통일을 저해하고 민족적화해를 막고 조국통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주관적인 표현을 쓰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민족적 화해와 조국통일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남북쌍방간에 앞으로도 많은 토의를 통해가지고 호흡을 맞춰야 될 영역이 많이 있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민족화해, 조국통일이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민족화해와 조국통일이라는 같은 말을 쓰더라도 분명히 지금 남북쌍방이 가령 같은 곡조이면서도 연주를 다르게 하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지 않는 한 이렇게 막연한 표현을 써가지고 합의서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걸 앞으로 시간을 두고 우리가 토의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보다 중요한 문제는 계속

해서 우리쪽에 대해서 통일을, 말하자면 민족적 화해를 저해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예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남북간에 상호 가지고 있는 법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가 어느 일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귀측의 사회주의 헌법의 조항들 그대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사회주의 헌법에서 제4조를 보세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 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해서 이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우리 남쪽과는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또 제10조를 봅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한다」 제11조는 「국가는 내외의 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며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한다」 또 제49조를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제71조를 보면 「국민은 제국주의들과 우리나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온갖 적대분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고.

또 귀측 노동당 규약도 보면요. 전문에 이런 조항 있잖아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구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것이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또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또 귀측의 형법이 있잖아요. 87년에 개정된 형법도 47조에 보면 이게 소위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에 관한 조항이 있고 여기에 애매한 표현이 있죠. 「공화국 국민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 주는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또 52조에 보면 또 인제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제목하에 또 범죄행위가 규정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북측안에서는 이러한 헌법과 이 노동당규약과 이러한 형법 조항이 실시되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가 그걸 시비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통일문제를 생각하려면 이걸 우리가 시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통일을 우리가 전제로 할 때는 통일되는 사회에

이러한 아주 집단적이고 유일사상적인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남과 북이 다 가지고 있는 법적 제도적 문제가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지 주관적으로 접근하면 쌍방이 서로 일방적인 요구와 주장을 개진하고 마는 입장이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통일문제가 해결되느냐, 바로 이것이 소위 귀측에서 말씀하는 실체인정론에 연계가 됩니다.

이런 것은 남은 남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북은 북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있는 현실을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전제위에서 통일문제를 보고 해결하기 시작해야 정상적이고 건설적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기본합의서 1조, 2조를 한 개의 장으로 묶어서, 거기에 인제 총칙에서 특수관계에 관한 어떤 정의를 내리고 1조, 2조를 한데 묶어서 하나의 장으로 취급하고 있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적어도 이러한 현실이 있는 상황하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법질서는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전제위에서 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데. 이것은 두고, 두고 더 토의를 해 봅시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문제는 제가 인제 말씀드렸지만 또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귀측은 북남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서 북남당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어떤 조직이나 단체, 개별적 인사들 사이에 접촉과 대화에 대해서는 절대로 허용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표현이 아니예요. 이 남과 북이 다 각각 이 분단이라고 하는 역사적 현실로 인해서 모든 것은 분단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없는 현실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현실조건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국민 또는 인민들에게 아마 북측도 그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정한 절차를 부여하는 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법에 합당하게 추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예요.

우리도 과거에 지금 여러가지 시대를 겪어 옵니다. 그러한 시대를 겪어서 88년에 우리가 「7.7대통령특별선언」 이후에는 국가보안법이 있지만 그 「남북교류협력법」이 있어서 「남북교류협력법」은 국가보안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서 교류협력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은 사람은 누구나 북에 대해서 접촉을 할 수 있어요. 지금 1,000건 이상의 신청건수가 허가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북측에서 호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접촉이 안되는 거지, 자꾸 북측에서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렇게 남쪽에서 실정법에 합당하게 법을 지키면서 남북간에 교류하고 협력하고, 접촉하고 통일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외면하고 오로지 북쪽에서 임의로 선택해 가지고 남쪽에 법질서에 따르지 않고 할려고 하는 사람들만 상대로 해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가지고 있는 범질서를 지키면서 하고자 하는 거의 99%의 건전한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접촉을 하고 교류하고, 협력을 하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견 허용이 됩니다. 이것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절대로 안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외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기본합의서 5조와 관련해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기본합의서 협상과정에서 그 「남북사이의」라는 표현을 「공고한 평화상태」앞에 넣었어요. 왜 넣었습니까? 「공고한 평화상태」에 실제 주인공이 남북이기 때문인데 「남북사이의」가 어디 갔는지 실종되고 없어요. 우리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거는 설명을 안하시고 이 남북간에 평화상태에, 평화의 주인공이 미국하고 북이라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요 원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규명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평화문제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6.25때문에 생겼는데 6.25가 어떻게 돼서 일어난 전쟁이냐 말이에요. 6.25는 내가 누구라고 안 그러지만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무력으로 침략함으로 해서 생겨난 전쟁이에요. 어느 한쪽이 미국을 상대로 일으킨 전쟁이 아닙니다. 남북의 어느 한쪽이 남북의 다른 한쪽을 무력으로 침략함으로 인해서 생겼고 그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군은 철수하고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침략당한 한쪽이 힘이 몰려가지고 어렵게 되니까 국

제사회가 유엔을 통해서 유엔군을 조직했고 여기에 미군이 유엔군으로 일환으로 들어왔고, 다만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유엔의 회원국이 아니 때문에 유엔결의 당시에 유엔참전국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과 유엔군 사이에 협정에 의해서 유엔군사령부에다가 작전지휘권을 이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엔군의 일부로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나서 휴전협정 발표 후에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로 휴전협정 서명당시에 우리측 내부에서 반대의견이 있었고 그러한 반대의견 때문에 휴전협정 서명장소에 우리 대표하는 장교가 참석을 안한 일은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마크 클라크」대장이 서명한 것은 유엔군사령관의 자격으로 서명한 것이지 미군사령관의 자격으로 서명한게 아니예요.

또 엄연히 대한민국군은 유엔군의 일부였고, 참, 사령부의 지휘하에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 뒤 군사정전위원회가 30여년, 40년 가까이 기능을 발휘하는 동안 언제든지 한국군을 대표하는 장성이 유엔군소속 군정위원으로 참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던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엔군사령부 안에서…….

북(백남준) : 이선생 내 말씀 도중에 안 됐는데요.

남(이동복) : 아니, 가만 있어요. 내 말씀, 아 내가 말씀 다 듣지 않았어요? 말씀 다 들었으니까, 내 말씀 조금만 들으세요.

북(백남준) : 나는 아직 구체적인건 얘기를 안했다고요.

남(이동복) :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 취지에 맞도록 할테니까. 그래서 내 이견 거기서 끊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군 장성이 유엔군 안에서는 유엔

군사령관이 누구든지 유엔군사령관이 장악하는 장성 중에서 수석대표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러한 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군사정전위원회를 갖다가 지금 본회의를 여는데 호응하지 않고 있는데 군사정전위원회를 여는데 호응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우리가 한겁니다.

거기에서 문제의 본질문제로 가면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우리 부속합의서 자체로 돌아오는 지혜를 우리가 좀 발휘합시다.

또 하나 자꾸 여러차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괄합의 동시실천원칙」이 언제 합의가 됐습니까?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귀측에서 연형목총리께서 말씀을 하신적이 있지만 어디에, 남북간에 무슨 합의가 된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귀측 부속합의서에, 기본합의서 협상과정에서 철회한 일부 표현이 나와있다 하는 것을 했더니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귀측이 그 사상문제는 절대로 철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 백위원장께서 작년 11월 15일날 5차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2차대표접촉 때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백위원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우리가 종전에 쌍방에 상대방의 사상을 신봉하고 상대방을 찬양하는 출판활동자유를 보장하는 안을 내놨다가 철회했어요. 결코 그쪽에서

이것에 위구심을 가지지 마시요, 이걸 사실대로 하자는 것입니다」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3차대표접촉 때 백위원장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선 우리는 합의서의 서문에 북과 남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에 관계가 아니라는 문구를 명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화해부문에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표현대신에 상대방에 존재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표현을 쓰며 귀측에서는 상대방에 존재하는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이랬어요. 우리가 다 당사자들이예요, 백위원장이나 나나.

이 기본합의서가 누구의 작품입니까? 우리 작품인데, 이 과정에서 몇 개의 조항들은 분명히 거론이 됐고 거론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다른 상대방의 조항과 연계시켜서 또는 연계시킴이 없이 철회된 조항들이 몇 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좀 섭섭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장 총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오늘 이자리에서 더 이상 반론을 안하겠어요. 이거는 내가 아까 기본발언에서 충분히 그 취지를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남북간에 정치분과위원회에서의 부속합의서를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또 시간을 소모하는 그런 심

총토의가 있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더이상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백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부분제에 대해서는 내가 의견을 이렇게 개진을 안해 놓으면 앞으로 우리 의논을 하는데 조금 균형을 잃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거니까 그런 정도로 하고.

우리 쌍방에서 나와있는 부속합의서안을 어떻게 이것을 다뤄 갈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의견을 말씀 드릴까요?

북(백남준) : 무수가요?

남(이동복) : 이제 이런 여러가지 입장을 설명하는 문제는 이 정도로 끝내고 이 부속합의서 양쪽에서 두개 안이 나와 있으니깐요 이 부속합의서, 우리가 지금 실제 해결해야 될 과제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 쌍방에서 나와있는 부속합의서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의논을, 토의를 진행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떻겠어요?

북(백남준) : 그렇게 합시다. 그 토의방법은 여러가지 있는데 내 생각은 장별로, 쌍방이 다 합의서초안 내놨으니깐 장별로 내려가면서 먼저 공통점을 찾아서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차이나는 점들은 찾아서 호상 조정을 해가지고 의견접근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남(이동복) : 뭐, 좋아요.

북(백남준) : 거기에 앞서서 이제 이위원장이 말씀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이동복) : 주고 받고 계속해요? 점심 먹고 합시다, 그럼.

북(백남준) : 아니, 제가 간단히.

남(이동복) : 점심먹고 합시다, 그럼.

북(백남준) : 간단히 얘길하겠습니다. 지금 이위원장은 여기에 무슨 사고 방법도 구시대적인 대결시대의 사고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보따리도 낡은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는 올해초에 헌법을 비롯해서 아까 그쪽에서 말씀한 무슨 형법이란 일련법들을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적으로 다 개정했습니다.

남(이동복) : 그 개정된 내용 좀 주세요.

북(백남준) : 지금 이제 쪽 무슨 우리 헌법이 뭐 맑스-레닌주의 어떻고, 무슨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어떻고, 무슨 이렇게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하는데,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지침으로 했다. 무슨 뭐 이런거, 무슨 뭐 하는데 그건 다 개정되기 전에 우리의 법들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귀측에서 이제 쪽 제기하는 것들이 다 새로 개정 됐어요.

남(이동복) : 그것 좀 주세요.

북(백남준) : 그래서 우리의 개정된 법을 알고 얘길 했으면 좋겠다 그런거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인가? 귀측에서 지금 우리측 무슨 헌법이에요, 당규약이요, 형법이요하고 시비해 나셨는데 그건 우리 한마디로 말해서 귀측의 국가보안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말하자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뭐인가? 쌍방의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운데서, 쌍방합의라는 건 어느 일방만 의무를 지는 게 아니죠? 이 통일에 저촉되고, 민족적 화해에 저촉되는 거라고 하게 되면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그 뭐이 나쁘니까? 뭐이 나쁘니까? 이거 억지로, 아까 일방적으로 주관적으로 한다,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주관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 억지로 이렇게 결부시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좀 균맞이 없는 소리들이 더러 있는데 말하자면 무슨 6.25에 대해서 뭘 누구 이러겠다, 말은 안하겠다. 그렇지만 한쪽이 침략을 당하는 쪽이 힘에 겨워서 미국이 들어왔다 하시는데 그거는 결국 인민학교에 가서 강당에서나 하면 통할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우리했다는 소린데 그건 온당치 못합니다.

그 죽은 이승만이한테 가서 물어보라요. 「맥아더」에게 물어보라요. 무엇때문에 그런걸 여기서 자꾸 거론하느냐 그말이에요. 그거 내가 더 애길 안하겠오.

그 다음에 그거는 귀측의 규약에 무슨 당사자라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당사자라는 거. 우리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문제에서도 북과 남이, 우리 남을 배제하자고 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동으로 노력하자.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마는 우리 북과 남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도록 하자. 그래 그쪽을 우리 배제하는 겁니까? 같이 노력하는게 또 나쁘니까? 아 그쪽

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 미국하고 우리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체결 또 해놓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는 대책을 강구하자는데 우리 합의서 안이 아닙니까? 뭐이 그리 나뻐니까?

남(이동복) : 그건요.

북(백남준) : 그 다음에, 가만 인제 좀 말씀드리겠어요.

남(이동복) :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북(백남준) : 내가 좀 말씀…….

남(이동복) :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북(백남준) : 아, 가만히 계십시오.

남(이동복) : 그런, 발상으로 하시면은.

북(백남준) : 그 다음에 뭐인가?

남(이동복) : 그런 발상…….

북(백남준) : 그쪽에서 이제 또 뭐인가? 무슨 이런 저 접촉과 내왕, 접촉 무슨 대화를 승인 안하는 거는 북에서, 하겠다는 사람이 천만이 넘는데 그걸 북이 접수를 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건전한 사람을 대상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데.

아니, 민족이 애국애족을 하겠다는 사람이 건전한 사람이지, 애국을 안하고 배족을 하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애긴가? 애족을 안하고 반역을 하겠다면 그게 불건전한 사람이지. 이거는 무슨 논리가 그런가 그 말입니다, 무슨 논리가 그말인가? 틀려먹은 논리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뭐 일괄합의, 내 저 길게 안하겠어요. 우리 기본문제 토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길게는 애길 안하겠는데 일괄합의 동시실천 문제와 관련해서 내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가지고 이미 말하자면 예비회담 과정도 이것으로 우리가 확인해서 의제를 정리했었고, 고위급회담 의제를.

그 다음에 고위급회담의 이 의제가 해결된 것도 여기에 기초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합의가 탄생된 겁니다. 이동복위원장이 이렇게 애길 했어요.

제4차 고위급회담 1차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세차례의 고위급회담과 세차례의 실무대표접촉에서 거론된 쌍방의 견해를 전면적으로 수렴해서 일괄 타결의 길을 열므로써 이 회담의 진전을 마련했다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이건 무슨 애집니까?

남(이동복) : 그게 일괄합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북(백남준) : 왜 관계없어요?

남(이동복) : 일괄타결이라는 것은 그때 주어졌던 여러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타결시켰다는 것이지.

북(백남준) : 아니, 가만 내가 말씀드리지. 아까 무슨 내가 뭘 애길하려는 데 그것도, 그것도 역시 아전인수격 해석입니다.

남(이동복) : 아, 그게 무슨 아전인수격…….

북(백남준) : 그쪽에서 뭐인가? 여러개의, 세개의 이런 합의문건 가지고 고위급회담 3차회담까지 왔다 그말이에요. 그러다가 귀측에서 우리는 단일합의서를 하자는 게고. 그러나 귀측에서는 뭐인가? 일괄합의를 하고

동시실천을 하겠다니까.

남(이동복) : 누가…….

북(백남준) : 우리가 이걸 하겠다.

남(이동복) :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북(백남준) : 네, 그럼 또 인용하지요.

남(이동복) : 또 인용해 보세요, 어디.

북(백남준) : 귀족 수석대표는 제4차회담 기본발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측은 의제와 관련하여 일괄합의, 동시집행을 강조해온 귀족 주장을 고려하여 이번에 화해와 불가침, 그리고 교류협력으로 명기한 새 합의서안을 제안한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단일 합의서안을 내놓으면서.

남(이동복) : 아니, 그게.

북(백남준) : 귀족 수석대표가 말한 겁니다.

남(이동복) : 언제 그걸, 그 원칙을 합의했다는 거예요? 귀족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북(백남준) : 아니, 이미 인정한 거 아닙니까?

남(이동복) : 귀족이 그러한 주장을 해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는 거지.

북(백남준) : 아니, 고려한다는 거는 뭐입니까? 반대를 해서 새로 내놓다는 겁니까?

남(이동복) : 아니,

북(백남준) : 우리 세개를 내놓았던 거.

남(이동복) : 귀측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러한
.....

북(백남준) : 그건 억지주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명백한
결 이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논의하면 우리회의가 더 재미없어요.

남(이동복) : 알았어요.

북(백남준) : 그래서 우리가 기본문제 우선 토의 합시다.

북(최성익) : 내가 하나만 딱 물어 보겠어요.

이자 그쪽에서, 그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보안법에는 명백히 우리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통일에 저촉되고 화해에 저촉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결 응당 할 얘기를 했다. 우리 노동당 규약
으로 말하면 아, 이제 그쪽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화해, 민주주의 혁
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 그 자주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아, 민주주의를 하자는 건데 그쪽에선 자주란 표현을 쓰고 민주주의 다
쓰는데 그런 문제 있고, 그쪽에서 국가보안법 관련해서는 지난 5월 14일
귀측 법무부 당국자도 법 차원에서 반국가단체라는 일면이 있다, 북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번째로 그쪽에서 이제 정전협정의 당사자 문제에 대해
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엄연히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국입니다.

내 한가지 자료 인용하지요, 세계에 공개된 자론데. 『정전협정에 조인
한 미국장성 「클라크」는 잘못된 시간에 잘못 고른 장소에 잘못택한 대상

과의 잘못된 전쟁을 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전협정에는 61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정전협정 조인당사자들만이 정전협정을 수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엄연히, 귀측은 58년 2월달에, 구체적으로 2월 25일입니다. 국회에서 정전협정 무효를 선포했습니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하나는 뭐인가? 이제 그 우리가 뭐 뺏든걸 많이 넣었다, 뭐 새로 첨가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건 우리 위원장선생이 충분히 말씀했습니다. 기본합의서, 저 북남합의서는 여덟개의 조항으로 돼 있고 부속합의서는 8조 34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 대책이 다 명기되는 거고. 여기 그 테두리안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응당히 그 화해일과 필요한 건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이러저러하게 말씀하는 건 다 그 부당하게 말씀하는데 그 우리안을 신중히 연구를 하고 토의를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북(백남준) :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 아까 이위원장이 말씀한 가운데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인제 조항별로 내려가면서 토론합시다.

그리고 우리 토의방법이 확정된 조건에서, 우리 서문을 봅시다, 이 위원장.

남(이동복) : 예.

북(백남준) : 서문은 우리가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

한 합의서의 제1장 북남 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안)』
이랬는데 귀측에서는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에 관한 합의서(안)』 이렇
게 돼 있어요.

남(이동복) :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좀 질서를 잡아가지고 나갑시
다. 그러면 지금부터 쌍방합의서(안)을 가지고 서문부터 시작해서 장
절로, 장·조·항으로 쪽 나갑니다.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그렇게 나갑시다.

북(백남준) : 그래서 이거 서문이 말입니다. 이 서문이.

남(이동복) : 가만 있어요. 그러면 이걸 좀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질서
를 잡아 나갑시다.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오늘은 우리측 지역에서 하는 회의니까 사회는 제가 볼게요.
이 다음 통일각에서 할때에는 백위원장께서 보세요. 똑같은 거 하는 거
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백위원장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할게.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그러니까 우리 서문부터 합시다.

북(백남준) : 예, 그렇게 합시다.

남(이동복) : 서문부터.

북(백남준) :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측에서 할때는 내가 사회를
하고.

남(이동복) : 그렇지, 그렇지.

북(백남준) :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한번 도입해 봅시다. 그러니까 한문제씩 한문제씩 쌍방의 이견을 조정해 내려갑시다.

남(이동복) :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측 부속합의서 여기 있어요. 제목이 말이죠, 제목부터 봅시다.

북(백남준) : 예, 제목부터.

남(이동복) : 제목이 우리안은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에 관한 합의서(안)』이고 귀측안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북남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이었는데 어느안이 낫겠습니까?

북(백남준) : 그 명백히 우리가 지금 장 제목들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쪽에 따라서 본래의 기본합의서의 조문을 낫던거를 철회하고, 그쪽에 맞췄으니까 그런 조건에서는 이 제목을 우리 제목으로 다는 게 제일 해박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북(최성익) : 그 7차회담 합의문에도 부속합의서 작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합의서하고 하는 건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북(백남준) : 그래서 요 제목을.

북(최성익) : 7차회담 그 서울에서 합의문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북(백남준) : 아니, 그럴건 없고 그건 저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도 부속합의서로 돼 있으니까. 그래 요 제목은.

남(이동복) : 최위원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데 위원장 대 위원장간에 얘기할 때는 조금은 좀 사양을 해주세요, 미안하지만.

북(최성익) : 아니, 회의를 돕기 위해서 그런건데.

북(백남준) : 아니. (웃음)

남(이동복) : 게다가 최위원 말씀을 들으면서 더러 몇가지 느끼는 소감은, 많은 부분은 북측위원들끼리 모여서서 말씀하실 때 하실 내용을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는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그런거를 가려듣고 불필요한 대답은 안할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좀 짐작을 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북(백남준) : 이위원장, 저 위원들이라는게.

북(최성익) : 필요한 얘기 해야죠.

북(백남준) : 위원들이라는게 와서 자리 지킬라고 그러는게 아니고 위원장을 돕는 사람들인데 빠진거야 말 해야지, 뭐.

그래서 제목은 말입니다, 그래 그 위원들 충분히 의견 줍시다. 그 다음에 제목은 뭐인가 하면 요거 해박하게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한번 용단내려 보시요. 장 제목 자체를 기본합의서 조문을 날려보내는 조건에서는 그렇게 하는게 더 좋습니다. 그것 또 무슨 문서장 보셔야 되겠소?

남(이동복) : 아니.

북(백남준) : 명백히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부속합의서」로 하게 돼 있고, 저번에 7차회담때 합의문에도 「부속합의서」로 돼 있어요.

남(이동복) :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이 「부속합의서」라고 쓰는건 뭐 난 큰 이견이 없고, 그러니깐 우리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북(백남준) : 우리는 북남이고.

남(이동복) : 『제1장 남북화해, 북남화해의 이행과 준수에 관한 부속합의서』 이렇게 합시다.

북(백남준) : 응?

남(이동복) : 『준수에 관한 부속합의서』.

북(백남준) :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이동복) : 『준수에 관한』.

북(백남준) : 저 『북남합의서 제1장』.

남(이동복) : 내가 전부를 양보했는데 그게 똑같은 뜻이고, 체제가 이게 나아요.

북(백남준) : 아니.

남(이동복) : 『준수에 관한 부속합의서』 이렇게 합시다.

북(백남준) : 그 『리행과』.

남(이동복) : 『이행과 준수에 관한』.

북(백남준) : 『준수를 위한』해야지. 아니, 『관한』하는 것보다, 그 관계되는 거다 하는 것 보다도 그걸 『위한』거다 하는게 더 좋지, 그걸 위한거다 하는게 좋지.

남(이동복) : (우리측 수행원들을 향해) 지금 다른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됐나?

북(백남준) :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위한』 돼 있습니다.

남(이동복) : 특별히 우리가 다르게 할 필요는 없지.

북(백남준) : 아, 『위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젠 이위원장이 한번 대범하게.

남(이동복) : 그것만 좀 놔둬시다. 그건 놔두고.

북(백남준) : 그건 놔두잡니까?

남(이동복) : 예, 그것만 놔둬시다. 『...에 관한』하고, 『...를 위한』만 놔둬시다.

북(백남준) : 예, 다른건 일치시키고.

남(이동복) : 그렇게 합시다.

북(백남준) : 『관한』하겠는가? 『위한』하겠는가? 그것만 내놓습니다.

남(이동복) :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합시다.

북(백남준) : 그것만 내놓습니다.

남(이동복) :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

북(백남준) : 그 다음에.

남(이동복) : 제가 할게요.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우리는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기본합의서”라 한다) 제1장 남북화해분야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것은 우리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제2조 2항의

표현을 그대로 딴 겁니다. 그 귀측 전문은 『북과 남이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북남화해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거 똑같은데.

북(백남준) : 예, 다같아요.

남(이동복) : 다 똑같다면은 그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조항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합시다.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그 2조 2항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하자고요.

북(백남준) : 2조?

남(이동복) : 2조 2항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각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에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제1장 남북화해분야의 이행과, 여긴 뭐 그냥 구체적 이행대책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 그대로 『구체적 이행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북(백남준) : 이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뭔가하면 『이하 “기본합의서”라 한다』는 거 있죠?

남(이동복) : 예.

북(백남준) : 그건 빼버리고, 밑에 내려오면 기본합의서란 말을 쓸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빼버리고, 나머지를 보면은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똑같습니다.

남(이동복) : 아니, 그러니까.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우리가 서로 그렇지 않아도 자꾸 표현을 바꿔 할 때마다 그 해석을 둘러싸고 또 자꾸 이상한 씨름을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위험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일단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걸 애길했습니까? 그러니까 2조 2항의 표현을 그대로 하자고.

북(백남준) : 2조 2항이면 어디요?

남(이동복) :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렇게 하면 돼요.

북(백남준) : 어떻게?

남(이동복) : 『남과 북은, 북과 남은, 남북,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 괄호는 지우고, 『제1장 남북 화해, 북남화해분야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북(백남준) :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북(최성익) : 우리는 『협의하고』로 돼 있습니다.

남(이동복) : 글썄, 그것을 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그대로 하자 그말이요.

북(백남준) : 그럼, 『따라』라고 하자는 겁니까?

남(이동복) : 그렇지.

북(백남준) : 아, 『따라』는 관계없어요, 『따라』는 넣읍시다. 『협의한데 따라』.

남(이동복) : 예, 그러니까 『구체적 이행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북(백남준) : 아니, 『구체적 대책』인데 『이행과 준수를 위한』.

남(이동복) : 아니, 그걸 빼고.

북(백남준) : 그럼.

남(이동복) : 이렇게 하자고, 『제1장 남북, 북남 화해분야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을 빼고, 『구체적 이행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그럼 이게 그대로예요. 그 2조 2항에, 똑같다고.

북(최성익) : 아니,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남(이동복) : 아니, 이게 2조 2항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해당부문』, 『해당부문』이라는 게 『남북, 북남 화해분야』 아니예요. 『...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제1장 남북, 북남』.

북(백남준) : 아니.

남(이동복) : 『화해분야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북(백남준) : 이위원장, 다른데서도 다 이행하고 준수를 다 넣는데 왜 정치분과만 자꾸 빼겠습니까?

남(이동복) : 그러면은.

북(백남준) : 다른 분과가 다 『이행과 준수를 위한』 돼 있습니다.

남(이동복) : 그래요? 그러면은.

북(백남준) : 맞춰야지요.

남(이동복) : 그렇게 해요?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북(백남준) : 예. 그럼, 그건 일 없습니다. 『협의한데 따라』.

남(이동복) : 그래요.

북(백남준) : 그건 일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한데 따라』 그리고 그 『기본
합의서』라는 건 뺏시다.

남(이동복) : 아, 가만있어요. 그런데 그 『기본합의서』가.

북(백남준) : 『라 함』 하는 거는.

남(이동복) : 가만 있어보세요. 가만 있어보세요.

지금 1장 총칙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달리할 모양인데, 그러나
『1장 총칙』에 우리가 그 『기본합의서』라는 표현을 쓴데가 있어요. 쓰는
데가 있는데, 이 앞뒤에 『기본합의서』를 다른데는 쓴데가 없나요?

북(백남준) : 없습니다.

남(이동복) : 제5조가 여기서 22조지? 그러니까 22조, 23조.

북(백남준) : 아니, 거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북남합의서』라고 쌍방이
다 통일돼 있는데 꼭 『기본합의서』라 해야 되겠어요?

남(이동복) : 아니, 그것을 우리는 그 『기본합의서』라고 약칭해 쓰고 있어

요.

북(백남준) : 우리는 그저 『북남합의서』라고.

남(이동복) : 『북남합의서』라고 적었어요? .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그것은 우리가 상호편의주의로 할 수가 있지. 우리는 이미 『기본합의서』로 쓰고 있으니까.

북(백남준) : 그것은 남겨둡시다.

남(이동복) : 그것은 남겨두자고요.

북(백남준) : 그것은 남겨둡시다. 『기본합의서』라고 하는가, 편의주의적으로 쓰는가 하는 거죠? 그건 남겨둡시다.

남(이동복) : 예.

북(백남준) :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이동복) : 가만있어봐, 가만계세요. 가만 계셔보세요.

그 다음에 1장 총칙입니다. 우리안에.

북(백남준) : 아니, 이것 아직 안끝났어요. 내가 한가지 다른데 넘어가기 전에 한가지 의견을 애길 할게요.

남(이동복) : 예.

북(백남준) : 여기서 우리가 『위한』하는 건 이제 합의된 거 아닙니까? 그런 조건에서 제목도 『위한』하는거 하나 마저 맞춰서 합의한 걸로 합시다.

남(이동복) : 어디가 『위한』이예요?

북(백남준) : 아니 『구체적 대책을』

남(이동복) : 『협의한데 따라』로 하라며.

북(백남준) : 아, 『리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이렇게 돼있으니까 『위한』했는데, 『관한』 대신에 『위한』하고 제목을 합의하자고요.

남(이동복) : 아니, 그건 좀 남겨두자고요. 그건 좀 남겨두자고. 아니, 충분히 알만하니까.

북(백남준) :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럼 기본합의서 요거는.

남(이동복) : 그럼 이제 제목은 『에 관한』하고 『을 위한』이 남았고, 그 다음에 전문은 완전히 합의했습니다. 『남과 북, 북과 남은 남북,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 제1장 남북 화해, 북남화해분야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다만 요 괄호안에 넣느냐, 안넣느냐? 넣을 경우에 어떻게 넣느냐 하는 것은.

북(백남준) : 하나 더 있습니다. 이위원장, 하나 더 있어요.

남(이동복) : 예.

북(백남준) : 『북남합의서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 다음에 우리는 『의』를 넣었습니다. 뭐인가 하면, 인용부호도 넣고 또 1장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서 『의』를 넣읍시다.

남(이동복) : 『의』를 넣어요? 『의』를 넣어요?

북(백남준) : 예, 예.

남(이동복) : 넣읍시다.

북(백남준) : 그럼 넣읍시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기본합의서』로 하나
나 뭐이냐,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남(이동복) : 그렇습니다.

북(최성익) : 또 하나 있습니다. 『분야』라는데.

북(백남준) : 응?

북(최성익) : 상대측은 『분야』가 있고, 우리는 『제1장 북남화해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백남준) : 예. 괄호안에 넣는 조건에서는 『분야』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 아낙에 『1장 북남화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명백한데 『분
야』라는데 필요없죠.

남(이동복) : 그럴까?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이거 우리가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북(백남준) : 아니, 그런게 필요없습니다. 이게. 그거 좀 민선생이 한번 자
문 좀 하시오.

남(이동복) : 이거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북(백남준) : 『분야』는 그만 둡시다.

남(민병석) : 괄호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북(백남준) : 괄호아낙에?

남(민병석) : 예, 괄호가 없다면.

북(백남준) : 『분야』는 뺏시다.

남(이동복) : 괄호하고, 『분야』를 뺀다.

북(백남준) : 예, 예.

남(민병석) : 그건 관계없습니다.

북(백남준) : 예, 관계없습니다.

남(이동복) : 괄호하고.

북(백남준) : 예, 예.

남(이동복) : 자, 그러면 전문은 넘어갔습니다.

북(백남준) : 예, 그렇게 합시다.

남(이동복) : 그 다음 이 제1장 우리(안)은 『총칙』입니다. 귀측(안)은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있다는 것은 짚어놓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의를 합시다.

북(백남준) : 그래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내놓은 거니까, 우리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좀 우리 입장을 말씀드려야 될 게 아닙니까?

남(이동복) : 예.

북(백남준) : 우리는 남측의 입장에 부속합의서(안)에서 이 총칙을 났는데, 우선 첫째는 북남합의서의 장으로 설정할 의의가 없는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런가, 부속합의서는 북남합의서, 그쪽에서 말하면 기본합의서죠? 북남합의서 각조항의 리행·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밝히는 문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속합의서에다가 북남합의서의 리행대책이 아닌 일반

적 원칙을 담은 이런 총칙이라는 장을 한개로 설정하는 거는 불합리하다. 불합리하다. 이건 리행대책이 아니고 말하자면 원론적인, 원칙적인 장이다 그말입니다. 이건 좀 불필요하다.

그 다음에 총칙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 이 내용이 부속합의서의 조항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까 여러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말씀 안했는데, 여기 1조에 부속합의서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 이것은 너무 자명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어떻게 밝혀져 있는가. 밝혀져 있습니다, 이 목적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각기 자기 해당 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이 목적이 명백한데 뭐하러 여기다 넣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필요한거다.

그 다음에 특수관계의 내용문제인데 이미 이것은 북남합의서 서문에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라고 명백히 규제돼 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문제를 총칙이란 장에 담고 그것이 북남합의서의 기초가 된다는 것까지 밝혀서 사실상 합의서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통일에 이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남합의서 1장 총칙』 이거는 철회하고, 그리고 이것은 넣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쪽에서 아까도 말씀했는데, 하나는 민족내부 관계라는 거다 그 내용이. 다른 하나는 뭐인가? 너도 유엔회원국이고 우리도 유엔회원국이라는 거다. 그건 극히 자명하고, 유엔 명단에 다 있는

건데, 세계가 또 아는 건데 그걸 여기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건 총적으로 볼 때 이행대책도 아니고 또 서문에 다 명백히 돼있는 거고, 자명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총칙이란게 필요없다고 우린 생각합니다. 이걸 뺐시다. 이걸.

남(이동복) : 의견을 잘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제목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다른 분과위원회 부속합의서(안) 제목은 교류협력 분과위원회 경우는 『남북사이의 경제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고, 『남북사이의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고, 군사분과위원회는 『남북 불가침 및 이행과 준수를 위한 무력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아직 합의가 안됐으니까.

북(백남준) : 그러니까 『관한』을 쓰자는 겁니까?

남(이동복) : 예, 『관한』으로 하는 것이.

북(백남준) : 그런데 그건 숙제로 남기자고 아까 이위원장이 말씀했는데, 우리 쌍방이 더 연구를 합시다. 제 생각하는데는 『관하여』보다 그것을 『하기 위한』 이게 더 좋지.

남(이동복) : 아니, 그것은 일종의 문건의 체제에 합당한 표현이 옳습니다.

북(백남준) : 그런데.

남(이동복) : 그런데.

북(백남준) : 문건의 형식을 맞추는 것도 좋은데 그게 내용에 가장 적절하게 좋지. 그게 준수와 이행을 『위한』 합의서다, 그게 더 좋지.

남(이동복) : 우리.

북(백남준) : 준수에 『관한』이다, 그거 보다 더 좋은게 아십니까?

그리고 더 연구를 합시다, 그건.

남(이동복) :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라면 육두문자를 써서 합의해도 상관없
없죠. 그러나 제3자가.

북(백남준) : 그건 과제로 남깁시다.

남(이동복) : 그래, 그건 과제로 남깁시다.

북(백남준) : 예, 예.

남(이동복) : 자,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1장 총칙인데, 우리는 이 부속합의
서에 1장 총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 부속합의서를 포함해서 기본합의서의 성패가 어디
에 걸려있느냐 하면, 어떤 조문을 설정하고 그 조문을 이행하는 문제를
협의하는데 쌍방간의 어떤 견해의 차이가 나올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두면
될수록 이 성패간의 이것은 문제의 가능성이 크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북기본합의서는 워낙 헌법적인 그러한 장전이기
때문에 불가피 했지만, 이 주체가 소위 남과 북이, 남과 북의 주체에 대
한 정의가 하나도 내린게 없어요. 남과 북이, 물론 정의가 안돼있는 건
아니예요.

아까 우리 백위원장이 내가 말씀한거에 대한 반박발언에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와있는게 있지. 뭐냐
하면 이 기본합의서에는 아무튼 있는 것을 있는대로 저걸 했으니까 대한

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주체의 명칭이 사용됐고, 그 주체를 그 주체의 법질서를 말이죠, 대표하는 기관들이 합의했고, 서명했고, 발효시켰고, 이러한 것이 그것이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명시가 돼야만 이 합의서의 실천이 보장·담보될 수 있다 하는게 우리의 분명한 생각이예요.

그리고 자꾸 아까도 이렇게 분명히 하면 분열지향적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논리는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남북간의 이 기본합의서에 토대를 둔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출발점을 잘 잡아야 돼요, 출발점을. 출발점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출발점은 엄연히 있는 현실 그대로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있는 현실을 어느 일방이 원하는 대로 변경시켜서 출발하려 한다면 다른 일방도 똑같은 걸 한다 말이에요. 우리도 북에 대해서, 가령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통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바라는 통일로 접근시키는데 용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걸 하지 말자 그거예요. 그런 거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총칙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총칙에서 뭘 표현하느냐? 있는 그대로가 뭐다. 우리 기본합의서 합의사항은 뭐냐? 전문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민족 내부분제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다. 그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

계는 뭐냐? 그것은 말이죠, 기본합의서에 여러가지 형태로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하나로 정리를 하자 그말이에요. 어떻게 담겨져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쌍방의 총리들이 자기 체제의 정부를 대표해서 합의했고, 서명했고, 또 정부를 책임맡고 있는 최고당국자가 귀측에선 비준까지 하지 않았어요?

북(백남준) : 귀측에선 안하구요?

남(이동복) : 우리는 재가했지.

북(백남준) : 재가는 비준이 아니고 뭐입니까?

남(이동복) : 아니, 비준하고 재가하고 의미가 다르지.

우리는 이거는 국가간의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비준절차를 안밟은거예요. 귀측에선 비준절차까지 밟았잖아요?

북(백남준) : 예, 밟았죠, 우리야….

남(이동복) : 그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하고, 그렇지 않아요? 글썄 그건 시비 안한다 말이야.

북(백남준) : 우리는 민의를 모아 합니다.

남(이동복) : 글썄,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을 이 총칙에 담아야 이 문제가 다 원만하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뒤에 여러가지 표현들이 쓰여요. 남과 북, 상대방, 상대방이 뭐냐 말어요, 상대방이.

북(조상호) : 상대방을 아실꺼 아니요?

남(이동복) : 상대방은 상대방이다.

북(백남준) : 아니, 상대방 모릅니까?

남(이동복) :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상대방이 뭐예요?

북(백남준) : 아니, 북과 남이 마주 앉아서 상대방 뭐입니까?

남(이동복) : 북과 남이에요, 그러면?

북(백남준) : 아, 북과 남이지.

남(이동복) : 북은 남의 상대방이고 남은 상대방.

북(백남준) : 그렇지요.

남(이동복) : 그 북은 뭐예요? 아니, 그 남은 뭐예요?

북(백남준) : 남은 남이지요.

남(이동복) : 남은 남이에요?

북(백남준) : 남은 남이지 뭐요? 남이 북이요? 북이 남이요? 아니, 그 명백한 것을 가지고 그러고 있어.

남(이동복) : 그거는, 그것은 말이에요.

북(백남준) : 내가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뭐 이야기 길게 할거 없구요, 아까 무슨 저 절대 그런 우리 절대 받아줄 수 없습니다. 우선 이위원장이 생각해 보시요.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목적이, 부속합의서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뭣 때문에 여기서 밝히고 있으며 동시에 그 무슨 민족 내부분제라는 거이 그거이 뭐인가 하면 서문에, 북남합의서 서문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 밝힐 필요가 있으며 유엔, 그쪽에 유엔 들어가 자니깐 우리도 같이 들어 갔지요? 그래 다 같이 유엔 성원국이지요? 그런데 그걸 여기다 밝힐 필요가 뭐 있느냐? 또 다른 하나 지금 북남합의서라는 기본합의서에도 없던 총칙이라는 장을 한개 분야에, 한개 장에

부속합의서에다 앓힐 필요도 없는 거이고. 또 동시에 뭐인가, 다른 부분의 부속합의서에 없는 형식을 구태여 화해부문의 부속합의서에다 가서 반드시 설정해야 될 그런 사정도 따로 없다, 그말이에요.

남(이동복) : 사정이 왜 없어요?

북(백남준) : 그런 사정도 없어요. 동시에 이걸 어디까지나 부속합의서지, 이게 뭐인가 하면 어떤 일반론, 일반원칙을 담는게 아니라 부속합의서라는 건 명백히 기본합의서 조항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담는거다. 이걸 필요없는 겁니다. 이거.

남(이동복) : 기본합의서....

북(백남준) : 그쪽에서 이걸 기어코 하자고 하는 걸 명백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에도 말씀했는데 총리들이 수표를 하고 그 다음에 최고 당국자들이 비준을 하고 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합의서 문건 밑에다 가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아무개, 대한민국 국무총리 아무개, 이래 수표까지 해놨으니까 되지 않느냐?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가서 남쪽, 남측, 저 무슨고 하니까? 정원식, 북측 연형묵 이렇게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호상 우리의 둘사이의 전화통지 이든지, 무슨 이런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건 다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남(이동복) : 그게 무슨 뜻이요?

북(백남준) : 그 무슨 뜻입니까?

남(이동복) : 뜻이 아무것도 없어요?

북(백남준) : 현재로선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남(이동복) : 글썄,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걸 여기다 써야 된다구.

북(백남준) : 그러니까 구경은 그쪽에서 뭐인가? 이 실체와 실체 사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이런 관계다. 궁극은 이것이 목적인데 이걸 절대 우리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남(이동복) : 근데, 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북(백남준) :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남(이동복) : 이미 실체를 인정하…….

북(백남준) : 뭐때문에, 그걸 무슨 애긴가 하니까, 우리가 호상 이해를 하면 되는거지 뭐때문에 공식문건에다 그걸 자꾸 싸인을 하자는 겁니까?

남(이동복) : 이미 사실을 받아 들이고 있단 말이야.

북(백남준) : 아니, 받아 들이는 걸 뭐때문에 정치분과위에다 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남(이동복) : 아니,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을 왜 분명하게 못합니까?

북(백남준) : 아니, 뭐때문에 난 이위원장이 이 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에다가 자꾸 나 이런 총칙의 장을 달라 그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남(이동복) : 왜 그러…….

북(백남준) : 다른 부속합의서에 있는 형식이 있는데.

남(이동복) : 아니, 왜 그러냐? 그거는요. 화해 분야하고 …….

북(백남준) : 이걸 교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에도 배치돼요.

남(이동복) : 가만있어 보세요.

북(백남준) : 위반된다 그말이에요.

남(이동복) : 화해분야하고 교류·협력분야하고 군사분야가 각각 성격이 다르다 그말이에요.

북(백남준) : 다르지요.

남(이동복) : 화해분야는 남북간의 정치적 관계를 규제한다구요.

북(백남준) : 그렇지요.

남(이동복) : 남북간에.

북(백남준) : 그렇지요.

남(이동복) : 교류·협력은 그중에…….

북(백남준) : 예, 협력교류문제를 다루지요.

남(이동복) : 협력교류는 그중에 협력교류라고 하는 특정분야를 다루는 거고.

북(백남준) : 그렇지요.

남(이동복) : 군사는 특정, 군사라고 하는 특정분야를 다루는 거예요. 화해는 남북간의 관계가 정치적으로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백위원장 말씀에 아주 이율배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북간에 실체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건 지금 받아 들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북(백남준) : 아니, 실체가 있다는 건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다고.

남(이동복) : 그렇지, 왜 그럼…….

북(백남준) : 아까 내 발언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남(이동복) : 그럼 왜 안해요, 그럼?

북(백남준) : 서로 상이한 실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부인하지 않았어요.

남(이동복) : 글썸, 그 객관적인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왜 명시를 못해요?

북(백남준) : 아니, 그런데 뭐 때문에 통일하자고 하면서 그걸 뭐인가 하면 호상 인정하기도 하고 도장 찍으려고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남(이동복) : 저 보세요. 여기 우리 총칙 1조…….

북(백남준) : 거 우리 받은 거 있죠?

남(이동복) : 2조 2항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남북사이의 특수관계는 상호관계의 주체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

북(백남준) : 아, 그건 그쪽 표현이라는 거예요.

남(이동복) : 가만 있어 봐요. 『분단조국의 평화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는 관계이다.』 여기에 무슨 그릇된게 있어요?

북(백남준) : 아니.

북(조상호) : 어떻게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가 아납니까?

남(이동복) : 예?

북(조상호) :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를 말하는게 아납니까?

남(이동복) : 어디에? 어디에 그런 관계라 그랬어요?

북(조상호) : 아, 그 조선민주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란게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가 아납니까?

남(이동복) : 그럼, 지금 우리관계가…….

북(조상호) : 아, 한가지 애길 하겠어요. 내 한가지만 애길하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아니라는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남(이동복) : 우리가 아니라 그랬잖아?

북(조상호) : 예. 귀측에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까? 『나라와 나라사이 관계가 아닌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란 말이 지금 논리가 성립됩니까?

남(이동복) : 그러니까 남북관계는 이중성이 있다, 그말이에요.

북(조상호) : 그거 변복이지요, 그게…….

남(이동복) : 아니, 왜 이중성이.

북(조상호) : 자기, 자기 부정의 논리입니다.

남(이동복) : 아니, 우리가 그러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예요?

북(조상호) : 아니, 가만있어. 한마디만…….

남(이동복) : 회원국이 아니예요?

북(백남준) : 조위원이 말한 다음에 좀…….

북(조상호) : 한마디만 좀 합시다.

북(백남준) : 조위원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북(조상호) : 예. 그리고 귀측의 실체를 국가로 보고, 국가로 보는 근거를

지금 서명형식을, 서명방식을 놓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당
치 않지요. 아주 초보적인 문제입니다. 이 논리가 왜 계속되는가?

남(이동복) : 왜 당치 않습니까?

북(백남준) : 아, 가만있으시오. 얘기하는데요, 듣고 얘기하시오. 아니, 서명
방식이 중요합니까? 그 무엇을 서명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서명을 했지요. 서명방식이 이제 다 설명이 됐습니다.

남(이동복) :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예요?

북(조상호) : 그래 가만 있으십시오. 아닙니다. 내가 얘기합니다. 서명한 내
용이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바로 서명 했습니다. 아,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서명했으면 서명방식도 그것이
어떻든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 서명방식은
하나의 편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 그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남(이동복) : 말씀 다 하셨어요?

북(조상호) : 그렇하고 아니, 그렇하고요, 현실 인정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니
우린 모든게 현실로부터 출발하지요.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지 않고 이거
출발하는 것입니까?

그런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분열역사의 비극이 46년간이나 지속돼 왔
는데 그걸 몰라서 오늘에 와서 이 시점에서 분열된 현실을 확인하고 인
정하자는 저의가 뭐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국가
와 국가간의 관계로 보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로 이걸 관계를 심화시

키면, 구체화하면 할수록 분열된 현실이 더 고착화되고 굳어진 다 말입니다. 아, 그거야 명백하지요. 산수지요, 이거.

남(이동복) : 자, 인제.

북(조상호) : 그걸 왜 자꾸 주장합니까?

남(이동복) : 그래 인제 충분히 의사전달 됐으니까.

북(백남준) : 아니, 조선생 말씀 다 들으시요, 좀.

남(이동복) : 아니, 충분히 의사전달 됐으니까.

북(조상호) : 아, 그러니까…….

남(이동복) : 거기에 대해서, 가만 있어 보세요.

북(조상호) : 아, 그 왜그래요?

북(백남준) : 다 들어 보시요. 들어 보시요.

북(조상호) : 다 얘기 하지요, 좀. 자꾸 거론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특수관계의 내용이 뭐 입니까? 기본합의서에 다 지적돼 있습니다.

특수관계의 내용이? 아, 그걸 복잡하게 논의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수관계의 내용이 뭐입니까? 민족 내부의 두부분이 서로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있지만 서로 상대방을 부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남(이동복) : 그 상대방이 뭐예요? 상대방이.

북(조상호) : 아, 상대방이라는게 무슨…… 들뿐 아닙니까?

남(이동복) : 상대방이 남이라 그러고 북이라 그러면 그걸로 상대방이 설명

이 돼요?

북(조상호) : 예, 그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니까, 기본합의서에 왜 제도를 존중한다 했습니까? 왜 내부분제에 불간섭한다고 했습니까? 예? 왜그런지 모릅니까, 그걸? 아, 이위원장이 모르고 지금 하는 애집니까?

남(이동복) : 자, 이제 말씀 다 하셨으면은 인제 그만 좀 하시고, 지금 자꾸 기본합의서의 전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기본합의서에 전문이 이렇게 돼있어요. 『나라와 나라사이의……』.

북(백남준) : 그걸 또 애길 하겠습니까?

남(이동복) : 가만 있어 보세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이미 남과 북이 어떤 그 나뉘어 있지 않다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이란게 있을 수 없죠?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야.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는 두개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개의 주체가 무엇이냐? 그게 이 1조, 1장 총칙이에요. 두개의 주체가 무엇이냐? 지금 백위원장이나 귀측에서는 남과북이다, 그러는데 남과북이 무엇이냐? 그거야, 남과북이.

그러니까 기본합의서를 보면은, 우리가 기본합의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것이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관계다』. 그러나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다』. 그러면 특수관계의 주인은 누구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이것을 그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뭐냐? 그것은 다같이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소위 그 주권국가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는 불가피하게 현실은 뭐냐? 이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접적인 관계는 민족내부 관계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면이 있는데 그것은 국제연합회원국으로서 갖고 있는 주권국가간의 관계라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깐…….

북(백남준) : 아, 그걸 우리가 밝힐 필요는 뭐입니까? 그게.

남(이동복) : 왜 밝힐 필요가 없나?

북(백남준) : 아니 뭐 때문에 아니 우리 쌍방간의 합의…….

북(최성익) : 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남(이동복) :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야 되느냐?

북(백남준) : 그래서 이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남(이동복) : 가만있어 보세요.

북(백남준) : 말씀도중에 안됐는데.

남(이동복) : 왜 그걸 밝혀야 되느냐 하면은.

북(백남준) : 애길 하라우.

남(이동복) : 우리가 이 기본합의서에 따른 부속합의서를 합의해서 이행하고 준수하는 과정에서 의무가 따르고 책임이 따라요. 의무와 책임의 주체가 누구냐? 의무와 책임의 주체로서, 책임의 주체가 명백해져야 이 부속합의서가 실천이 보장될 수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무와 책임의 주체가 뭐냐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이 합의서는 또 만들어 놓고 밤낮 해석을 달리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된다 그겁니다.

북(백남준) : 해석을 달리할게 뭐 있습니까?

북(최성익) : 아니, 그 저 합의서 제일마지막란에 서명란이 있습니다. 사실이 부속합의서가.

남(이동복) : 글썄,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 쓰자 그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북(백남준) : 아니, 쓰고 있는데 뭣 때문에 또 여기다 한단 말이에요?

북(조상호) : 아니, 이위원장.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사이 관계가 아닌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입니까? 그렇습니까? 정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사이 관계가 아닌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인가요?

남(이동복) : 조선생! 귀측에서 말씀하실때 항상 내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모든일을 단순화 시켜서 몰아갈라 그래요. 내가 남북관계는 복잡한 관계다. 왜 복잡한 관계냐? 한쪽으론 민족 내부관계 측면이 있고 다른쪽으로는 현실로서 이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 가입돼있는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의 측면이 있다. 이런 복잡성을 띄고 있다 그러는데, 그걸 말이야 그렇게 단순화 시켜서 애길하면은 그거는 얘기가 되질 않아요.

북(조상호) : 아니지요, 단순하지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남(이동복) : 글썄, 귀측 진리는 단순할지 몰라도 우리측 진리는 복잡해요.

북(조상호) : 복잡한게 아니예요.

북(백남준) : 아, 진리라는게 하나지 뭐, 둘이겠소?

남(이동복) : 진리가 어떻게 하나예요?

북(백남준) : 아, 진리야 하나인걸 둘이겠소?

남(이동복) : 진리가 어떻게 하나예요?

북(백남준) : 어떡해서 진리가, 진리야 하나지, 뭐.

남(이동복) : 진리가 어떻게 하나예요?

북(백남준) : 아, 진리라는게 뭣 때문에 진리가 여러갯니까?

북(최성익) : 거, 실무적인 문제 하나 물어봅시다, 실무적인 문제.

남(김달술) : 잠깐만, 잠깐만.

북(최성익) : 실무적인 문제 하나 물어볼게 있는데.

남(이동복) : 말씀하세요.

북(백남준) : 진리가 여러개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

북(최성익) : 내가 저 위원장도 말씀했기 때문에 난 내가, 하나 물어 보자
요, 실무적인 문제.

남(김달술) :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내가 좀 애길 하고요. 이거 이런식으로
특수관계 문제가지고 토론하면은 우리쪽에서도 할말이 없어서 안하는게
아니다.

북(백남준) : 아니, 하시라요. 하시라요. 글썄.

남(김달술) :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북(백남준) : 아, 누가 막습니까?

남(김달술) : 한정없이 이문제를 가지고 계속 토론하겠느냐?

북(백남준) : 예, 그렇게 합시다.

남(김달술) : 아니면은 이렇게 쌍방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고 토론이 진행안
될 때에는 다음 문제로 일단 제껴놓고 아까도 제껴놓고 넘어 갔단 말이
예요.

북(백남준) : 그렇게 합시다. 제깍시다.

남(김달술) :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북(백남준) : 아, 그건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남(김달술) : 다음 문제로 넘어가 가지고…….

북(최성익) : 그런데 요 실무적인 문제 하나 물어 봅시다. 물어볼게 하나 있습니다.

남(김달술) : 합의가 안되는걸 계속 토론 할거냐? 이거야. 안된다말야. 그러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 가도록 이렇게…….

북(최성익) : 아,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요게 지금 총칙에서 다루는 특수관계가 북남합의서의 서문에 있는 겁니다. 제1장 화해에 있는게 아니라 북남합의서의 서문에 있는거기 때문에 제1장을 논의하는데 왜 서문에 끌어 들이는가?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난 귀측에서 요걸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걸 좀 얘기, 말씀드리고.

남(김달술) : 자, 이젠 인제…….

북(백남준) : 그래서 저 이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그래 이문제는.

남(김달술) : 아니, 계속 뭐 하실겁니까? 다음으로 제쳐놓고 넘어가야지.

북(백남준) : 이문제는 우선 그 말하자면 그 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명한 것이고.

남(이동복) : 아니, 아무튼 그런 말씀은 생략하고.

북(백남준) : 그 다음에 뭐인가 하면, 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도 이젠 위배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젠 받아 들일수 없

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기여코 넣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거는 일단락 이렇게 하고서 미뤄 놓고서 합시다.

남(이동복) : 가만있어. 미뤄 놓는데, 기록상 지금 백위원장 말씀을 그대로 그냥 그것만 기록에 남겨놓고 넘어갈 순 없어요. 우리는 이 남북기본합의서의 화해분야에 관한 이행·준수에 관한 구체적 대책을 담은 이 부속 합의서에는 반드시 총칙의 장이 있어야 되고 이 상호특수관계 내용을 정의하는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걸 내놨는데 지금 인제 귀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걸 가지고 더이상 그 애길해도 당장은 그 의견 접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경제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걸 일단 토의를 유보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 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북(백남준) : 예, 넘어갑시다.

남(이동복) : 그래서 그러면 인제 귀측의 안에는 1장, 1장이고 우리는 이제 2장이 돼서 우리는 지금, 귀측은 1장이 그 우리 기본합의서의 1조만을 다루고 있고 우리는 그 2장에서 기본합의서의 1조, 2조 그러니깐 상대방 체제, 그 제도의 인정·존중과 그건 2조고, 3조에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대한 불간섭 조항을 통합해서 여기에 조항을 설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귀측은 1장은 1조, 상대방 제도·체제에 대한 인정·존중, 그리고 2장으로 상대방 내부문제에 대한 불간섭 이래가지고 조항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귀측의 1장, 2장을 그냥 1

장, 2장단체로 우리 그 2장하고 통합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북(백남준) : 예, 검토를 합시다. 검토를 하는데는, 검토를 합시다. 우리도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우선 제가 좀 말씀 드리습니까?

남(이동복) : 아니, 내가 좀 먼저 말씀드리죠.

북(백남준) : 그럼 말씀하시고요.

남(이동복) : 아, 지금 우리는 왜 그럼 저 이 두조항을 병합해서 설정을 했느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기본발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을, 간단히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우리 화해 분야의 8개조항, 기본합의서 조항들은 여타 교류·협력이나 군사분야하고 달라서 사실은 남북기본합의서 전체를 말하자면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조, 2조는 정치적 측면을 규율하고, 남북관계, 그다음에 3조는 소위 선전적 측면을 규율하고, 그다음에 4조는 여러가지 폭력문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규율하고 그다음에 5조는 군사문제, 소위 정전협정문제, 6조는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다루는 외교문제, 그다음에 7조는 연락사무소, 그다음에 8조는 이 분과위원회, 이렇게 돼 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각 조항의 성격상 같은 정치적 영역에 속하는 1, 2조는 통합을 해서 한개의 장으로 설치하는게 좋다. 뿐만아니라 이 내부문제 불간섭과 체제 인정·존중은 동전의 표리와 마찬가지로요. 그것을 인정·존중하는 방법으로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 내부문제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것이 그 행위의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은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귀측은 그렇지 않고 조금은 기계적으로 1조는 1조, 2조는 2조 그래서 1조, 2조를 인제 별항으로 이렇게 별개의 장으로서 편성을 했는데 우선 이 장의 편성문제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 각 조항별 토의는 별도로 합시다.

북(백남준) : 그렇게 합시다. 그 장 문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선 그쪽에서 아까 기본발언에서는 그러고 이제 이위원장이 말씀하는데 그건 인제 정치적 문제기 때문에 1조하고 2조, 정치분야에 속하는 거다. 저는 그 주장이 합리적이 못된다고 봅니다.

제1장 화해장에 넣은것은 다 정치적 문제입니다. 제도인정·존중 문제, 내부분제 불간섭 문제, 비방·중상 중지문제, 그다음에 무슨 파괴·전복 안할데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인가하면 국제 무대에서, 국제 정치무대에서 공동으로 협력할데 대한 문제, 다 정치문제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우리가 문제가 다르다고 하면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는 문젠데, 그걸 우리가 종전의 우리 기본합의서를 채택할 때에 제2장 불가침에 넣자. 이게 옳다. 그쪽이 더 가깝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굳이 이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정치에 더 가깝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 넣자. 그래 봤다면 그것도 정치문제입니다.

그럼 다같은 정치문젠데 무엇 때문에 1조하고 2조만을 하나, 그것만 정치문제기 때문에 그걸 합치자. 그건 부당하고요.

그다음에 뭐인가, 이 1조와 2조를 합쳐서 한개조로 만드는 건 어느모

로나 합리적이 못됩니다. 이 북남합의서 정신과 요구에 맞지 않는다. 북남합의서의 모든 조항들은 경중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독립장으로 부속합의서에 넣고 어떤거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딴 조항으로 놓고 여러갓 합쳐 놓는다. 이런 문제가 성립될 수 없다. 이거는 합의서 정신과 요구에 맞지 않는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지금 이렇게 합쳐 놓으면 문제토의를 순조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이걸 두개를 합쳐 놔기 때문에 조항별 내용부분이 명백치 못합니다. 이러면 조항별 내용토의도 매우 어렵게 됩니다.

또 이걸 둘을 합칠만한 성격이 못됩니다. 어째서 못되는가? 이 두개의 내용은 성격상 서로 별개의 두개 조항입니다. 성격상 다릅니다. 그 성격이 다른걸 한데 묶어놓고 각 조항의 이행대책을 반영한다는 거는 합리적이 못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동위원회가 나오면 부속합의서를 가지고 또 그걸 수많은 세부 실천안들을 작성해야 되겠는데 그때 이 복잡성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이런 의미에서도 이거 합치는게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따로 떼낸다 그래서 그 구속력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하필이면 다 같은 화해장의 정치적 문제를 갖다가 요것만 정치적 문제라 하며 둘을 합치겠는가? 이거 가릅시다. 가르면 어느 모로 보든지 편리합니다.

그 토론에서도 좋고 이행에서도 좋고 합의서 정신과 요구에도 맞고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남(이동복) : 이렇게 해 보십시오. 그 장 편성문제는 숙제로 남겨놓고.

북(백남준) : 그것도 또 숙제니까?

남(이동복) : 숙제로 남겨놓고 우리가 2장에서 1조, 2조를 통합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 조항을 설정하고 있고, 귀측은 1장에 네개 조항, 그다음에 2장에 네개조항, 여덟조항을 세항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세항별로 토의를 합시다.

세항별로 토의를 해서 그 토의된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뭐 하나로 하든지 둘로 나누든지 하는 것은 그 뒤에가서 좀 귀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북(백남준) : 그 연역법보단 낫습니다, 귀납법이.

남(이동복) : 그렇게 합시다.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인제 한시인데 뭐 좀 의견을 구해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다면 오늘도 점심 식사 후에도 해도 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괜찮다 그러시면은 점심식사 후에 좀 모여서 토의를 좀 더 하면 어떻습니까?

북(백남준) : 그거 뭐 그렇게 합시다. 그래 이제 저로서는 뭐 그렇게 할바에야 뭐, 그냥 오늘은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이제 우리가 총칙 1장 놓았던 문제 우리가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개조하고 두개조 형식에서 합친게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또 연구를 해 보신다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나머지는 3장부터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 저기 내려가면서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 1장을 우리는 그쪽에서 1장에 속하는게, 저 우리의 1장에 속하는게 요런요런 문제다, 2장에 속하는건 요런요런 우리 다 구분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래서 아마 좀 시장하시기도 하시다는 것같은데 우리도 시장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만하고.

남(이동복) : 오후에 안해?

북(백남준) : 오후에? 늙은 사람 좀 못살게 구는구만. 그래서 그것 또 연구해가지고서 다음 나오실때.

남(이동복) : 그게 좋은데, 그러면은 요다음 회의일자를 조금 당겨서 좀 어떻게 합시다.

북(백남준) : 네, 그래서 어쨌든 아니, 우리 저 빨리 하는거 우리도 원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아까 이위원장이 기조 보고에서도, 발언에서도 말했지만은 우리 저 9월 15일이라는게 얼마 없어요.

남(이동복) : 글썸.

북(백남준) : 예, 얼마 없기 때문에 좀 앞당기면서 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회의 마치게 되니까 그저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토의 방법론도 확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서문, 1장, 2장까지 들어갔고, 그래서 아주 성과가 컸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번 우리 회의에서는 이 의견차이가 있는것들을 좀 좁혀가지고 문안정리에 넘길 수 있게끔 쌍방이 다같이 종전의 그 비블레이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서 좀 이 순차든지 그다음에 순차 배열이든지, 저 조항들, 그다음에 내용이든지, 차이나는 것들을 서로 접근시켜가지고 다음번엔 좀 늘려서 그래서 무슨 위원접촉에 넘긴다든지.

남(이동복) : 내 생각에는 우리 요런 전체회의를 한 두번정도만 더 합시다. 왜냐하면 이 감을 우리가 해서 위원접촉한테 줘야지 그러지 않아가지곤 우리가 무책임하니까.

북(백남준) : 그저 그래 다음번에 나올때에는 그저 뭐인가 하면 이위원장이 우리안에 맞춰가지고 나오면 다음번에도 돼.

남(이동복) : 우리안 받으면야 금방돼지 뭐. 그건 또 우리안 받으라고 그랬다고 또 나한테 화를낼라. 오전에 괜히 또 어똥한걸 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한참 또 그러더니 말이야.

남(김달술) : 끝내시기 전에 제가 꼭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아까 백남준위원장께서.

북(백남준) : 아니, 그런데 또 저 뭐 새로운 얘길 하겠소?

남(김달술) : 아니, 아니.

북(백남준) : 뭐, 결속을 했는데 또 뭘하겠오?

남(김달술) :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아까 그 헌법을.

북(백남준) : 그 저 이위원장이 우리 위원들 말할때는 자꾸 말하지 말라하면서 또 저 달술선생이 얘길하니까 또 언권을 주라 하누만.

남(김달술) : 아니, 아니. 언권 안주시겠으면 내 말 안하겠습니다.

북(백남준) : 아니, 말씀하시오. 말씀하는데, 뭐 우리 결속하고 다음번에 회의 때문에 필요한게.

남(김달술) : 아니, 그래서 그 결속하기 전에 날짜 아직 안 잡으셨으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헌법을 개정하셨고 또 형법을 개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신걸로 내 들었어요.

그러시면서 우리쪽의 그 헌법하고 형법내용을 알고 말을 하라, 요런 말씀이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귀측에서 그 개정헌법, 개정헌법의 내용에 대해선 솔직히 알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털어놓고 얘길한다면은 아까 그 제 1장 특수관계 문제라든지 기타 앞으로 토의될 내용의 상당한, 말하자면 귀측 법내용을.

북(백남준) : 아, 간단히 얘길 하시오. 그러니깐.

남(이동복) : 요다음에 줌.

남(김달술) : 요다음에 나오실때 귀측 헌법, 개정된 헌법과 개정된 형법을 줌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니냐.

북(백남준) : 저 이위원장이 난 상당히 상세하고 그다음에 모든건 다, 요즘 보니까 뭐 다 장악하고 있는것 같은데, 7차회담때 아마 솔하게 거기 나왔습니다.

남(이동복) : 아니야, 그건 없어요.

북(백남준) : 아, 그래요. 그럼 없다고 합시다. 뭐 그래 나왔는데.

남(이동복) : 더군다나 헌법은 뭐.

북(백남준) : 우리가 저 뭐인가?

남(이동복) : 우리가 그때 입수한 형법은 87년에 개정된 형법이고.

북(백남준) :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법률조문이니 이런 것들 우리 앞으로
우리 토론해야 돼지 않습니까?

남(이동복) : 그때까지 미루실 작정…….

북(백남준) : 아니, 토론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요 법조항 놓고 토론하
는건 그건 공동위원회 할 일이고, 그래서 호상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각종 헌법, 형법 그다음에 거기 여러가지
법들이 많은데 무슨 5도민 무슨 법이요, 무슨 뭐 여러가지 많은데 그것
도 한 조 좀 가지고 오십시오.

남(이동복) : 아, 그러면은.

북(백남준) : 우리도 그쪽에서 요구하는걸 우리도 가서 좀 탐구를 해 보겠
습니다.

남(이동복) : 그 저기 목록을 하나 만듭시다. 서로 필요로 하는걸.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어떻게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그 법령의 목록을 하나 만들어
서 요청합니다.

남(신광옥) : 알겠습니다.

북(백남준) : 지금까지 거 감출거 없으니까 우리가 그쪽에서 뭐 안갖다준
다, 그래서 저.

남(신광옥) : 서로 교환합시다.

남(이동복) : 그래요.

북(백남준) : 우리 또 거 안준다 그래서.

남(이동복) : 우리는.

북(백남준) : 그쪽에서도 그럴게고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교환하는 거
는 내가 지금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남(이동복) : 예. 목록을 가지고 나오세요.

북(백남준) : 나도 올라가서 이렇게 하겠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그 몽땅 우
리가 참고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고 다 준비를 하십시오.

남(이동복) : 그리고 그쪽에 요청하고 싶은 목록도 만들께.

북(백남준) : 예, 예.

남(김달술) : 저, 그런데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자꾸 지연이 되는데, 문제
가 있는데 사실 이 안에 내용토의에 들어가면 솔직히 해서 쌍방간의 법
정 내용문제가 지금 대단히 큰 문제,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연락관
통해가지고 목록 전달하고 다음번에 가지고 나오셔도.

북(백남준) : 아, 호상 저 뭐인가하면 아무래도 내일, 이따가 그걸 토론 안
할 수 없습니다.

남(김달술) : 그건 토론 해야지. 토론해야 됩니다.

북(백남준) : 이걸 토론 해야 됩니다. 토론해야 되는 조건에서 뭐이 의심스
러워서 자꾸…….

남(이동복) : 아니,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한템포 죽입시다.

요다음 회의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그 법령의 목록도 하나 만들테고 귀측에 대해서 요청하고 싶은 법령의 목록을 만들테니까 귀측에서도 똑같이 해서 우리한테 귀측이 우리한테서 받고 싶은 법령 목록하고 또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법령의 목록, 그건 남북, 우리 대화하면서 필요한건 다 거기 들어가면 되니까 그걸 서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하고 그 다음에 서로 주는 것은 책임연락관 통해서 하면 되니까.

북(백남준) : 아니, 아니, 다음번에 앞으로 우리 나올때 그 목록 무슨 한다는 거. 그거 가지고 나오는 방향으로 쌍방이 다 같이 노력합시다. 다음번에.

남(이동복) : 예, 목록 확인하고. 목록 가지고 나오고, 목록…….

북(백남준) : 예. 목록 가지고 나오시겠어요?

남(이동복) : 그 책을 가지고 나올까요?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법률책을 가지고 나올까요?

북(백남준) : 아니, 글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

남(이동복) : 우리는 그 법령집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나올게요.

북(백남준) : 법령집이 있어요?

남(이동복) : 예. 법령집이 있죠.

북(백남준) : 우리는 무슨 법령집까지는 뭐, 요즘 개정한거 많으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남(신광옥) : 우리쪽에는 그 개정일자, 공포일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북(백남준) : 예. 그건 그저 호상 양해가 되었으니까.

남(이동복) : 그러니까 요다음 회의때, 우리 회의때는 목록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교환하고 그렇게 하자구.

북(백남준) : 난 저, 내가 범롤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저 다음번에 내 끼고 오마, 그것까지는 답변을 못드리니까.

남(이동복) : 글썸, 글썸.

북(백남준) :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번 회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이동복) : 그 저 닥의 사정은 어떠세요?

북(백남준) : 아니, 우리는 빨리 하자는 겁니다.

남(이동복) : 빨리 하자는 거죠?

북(백남준) : 예, 예. 그런데 빨리 하는데는 6월달은 좀 힘들 것 같구요, 그 왜그러나 하면 군사분과회의도 있고요, 협력교류분과회의도 있고 또 6월 16일에 핵통제 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남(이동복) : 우리가 24일날 합시다.

북(백남준) : 그다음에 적십자 회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남(이동복) : 24일날 합시다.

북(백남준) : 아니, 그건 무슨 저기 이위원장이 뭐 내 사정을 좀 모른, 아닌 보살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것들이 다 여기 끼어 있으니까요, 6월달은 힘들다구요, 그저 7월달에 가서는 아무때라도 날짜 잡아 보시오.

남(이동복) : 6월달 안돼요?

북(백남준) : 6월달에 보시오. 그저 합니까, 지금.

남(이동복) : 그럼 7월 1일날 하지, 7월 1일날.

북(백남준) : 무슨 요일입니까?

남(이동복) : 수요일이요.

북(백남준) : 7월 1일이?

남(이동복) : 예, 7월 1일.

북(백남준) : 7월 초하룻날 하겠습니까?

남(이동복) : 아, 7월 1일날 합시다.

북(백남준) : 그거 한 저 3, 4일쯤 하든지.

남(이동복) : 7월 1일날 해요. 수요일날 좋지 뭐.

북(백남준) : 수요일날 좋을게 뭐요? 한 3, 4일쯤 합시다.

남(이동복) : 나, 원 참.

북(백남준) : 7월 2일. 7월 2일 하죠.

남(이동복) : 7월 2일?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뭐, 그렇시다. 우리 저 민병석 위원께서는 지금 정식으로 신고
합니다. 그때 출장중이기 때문에 요자린 좀 비더라도 용서하십시오.

북(백남준) : 나는 이게 민족일이 더 성급한것 같은데 자꾸 비행기 타고 어
디로 다니는 소리만 하거든.

북(최성익) : 민족의 중대사를 논하는데 뭐…….

남(이동복) : 그래서 6월달에 합시다. 6월달에 하면 뭐.

북(백남준) : 6월은 힘들어. 저 핵통제까지가 다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적십

자회의라는게 내 생각에는 잦아질 것 같고.

남(이동복) : 뭐 그건 양해해 주세요. 뭐 또 우리가 우리 민위원도 그렇고 본래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본래하는 일에 우리가 또 7명씩이나 이렇게 참석하고 이랬는데 한, 두사람 그런 편의는 좀 봐줘야지요. 그렇게 좀 양해해주십시오. 이렇게 특청합니다. 그대신 다른 위원은 전원 참석할테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